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행	정	안	전	부	소관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소관							
진	실	·	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소관
10	·	29	이	태	원	참	사	특	별	조	사	위	원	회	소관	
인	사	혁	신	처	소관											
경		찰		청	소관											
소		방		청	소관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목 차

I. 소관부처 결산	1
II. 심사경과	3
III. 결산개요	4
【행정안전부 소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3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56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66
【인사혁신처 소관】	76
【경찰청 소관】	92
【소방청 소관】	111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20
【행정안전부 소관】	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3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37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38
【인사혁신처 소관】	139
【경찰청 소관】	142
【소방청 소관】	149
V. 대체토론의 요지	153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55
VII. 찬반토론의 요지	156
VIII. 심사결과	157
IX. 소수의견의 요지	158
X. 기타 필요한 사항	158
※ 별첨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결산 심사결과	159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I. 소관부처 결산

1. 행정안전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5. 인사혁신처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공무원연금기금

6. 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출

7. 소방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II. 심사경과

1. 제 출 일 자 : 2025년 5월 30일

2.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2일

3.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8. 27.)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
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2025. 9. 1.)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
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

상정 · 심사 ·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9. 1.)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
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인사혁신처 소관,
경찰청 소관, 소방청 소관 :

상정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원안가결)

Ⅲ. 결산개요

【행정안전부 소관】

1. 세입·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없음.
-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3,068억 1,100만 원이나 3,150억 1,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813억 7,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9.3%)되었고 336억 4,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954억 1,000만원이나 1,283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07억 7,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6.3%)되었고 175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13억 4,100만원이나 933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53억 원이 수납(수납률 91.4%)되었고 80억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입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295,470	128,372	110,777	17,595	0	8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41	93,322	85,300	8,023	0	91.4
지역자율계정	1,861	17,801	17,771	31	0	99.8
지역지원계정	9,480	75,467	67,475	7,992	0	89.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54	54	0	0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합 계	306,811	315,016	281,377	33,641	0	89.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72조 4,473억 5,600만원, 예산현액은 72조 4,790억 2,600만원이며, 이 중 70조 1,903억 9,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8%)되었고 261억 9,800만원이 이월, 2조 2,624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69조 7,588억 1,800만원, 예산현액은 69조 7,903억 3,600만원이며, 이 중 67조 5,059억 5,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7%)되었고 259억 7,100만원이 이월, 2조 2,584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조 6,885억 3,800만원, 예산현액은 2조 6,886억 9,000만원이며, 이 중 2조 6,844억 4,6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2억 2,700만원이 이월, 40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출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69,758,818	69,790,336	67,505,953	25,971	2,258,412	9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88,538	2,688,690	2,684,446	227	4,017	99.8
지역자율계정	216,684	216,684	216,684	0	0	100.0
지역지원계정	2,453,891	2,454,043	2,449,799	227	4,017	99.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030	11,030	11,030	0	0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933	6,933	6,933	0	0	100.0
합 계	72,447,356	72,479,026	70,190,399	26,198	2,262,429	96.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총수입·총지출 결산

(1) 일반회계

가. 총수입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2,954억 7,000만원이나 1,283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07억 7,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6.3%)되었고 175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재산수입(11)	18,448	16,521	14,816	1,704	-	89.7
관유물대여료(51)	3,362	4,656	4,057	598	-	87.1
토지대여료(511)	424	116	84	31	-	72.4
건물대여료(512)	2,938	4,540	3,973	567	-	87.5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15,086	11,865	10,759	1,106	-	90.7
기타재산이자수입(546)	15,086	11,862	10,756	1,106	-	90.7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7)	-	3	3	-	-	100.0
경상이전수입(12)	268,038	101,153	85,681	15,473	-	84.7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1,206	82	1,124	-	6.8
몰수금및추징금(562)	-	48	-	48	-	0.0
징계부과금(564)	-	51	-	50	-	0.0
과징금(565)	-	1,107	82	1,026	-	7.4
변상금및위약금(57)	-	2,589	1,473	1,116	-	56.9
변상금(571)	-	8	-	8	-	0.0
위약금(572)	917	2,581	1,473	1,108	-	57.1
가산금(58)	-	4	1	3	-	25.0
가산금(581)	-	4	1	3	-	25.0

관/항/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기타경상이전수입(59)	267,121	97,354	84,125	13,230	-	86.4
기타경상이전수입(596)	267,121	97,354	84,125	13,230	-	86.4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994	1,712	1,294	418	-	75.6
면허료및수수료(65)	37	41	40	1	-	97.6
면허료및수수료(651)	37	41	40	1	-	97.6
잡수입(69)	957	1,671	1,254	417	-	75.0
기타잡수입(691)	957	1,671	1,254	417	-	75.0
수입대체경비수입(14)	7,990	8,985	8,985	-	-	100.0
잡수입(69)	7,990	8,985	8,985	-	-	100.0
기타잡수입(691)	7,990	8,985	8,985	-	-	100.0
관유물매각대(15)	-	1	1	-	-	100.0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73)	-	1	1	-	-	100.0
유동자산매각대(732)	-	1	1	-	-	100.0
합 계	295,470	128,372	110,777	17,595	-	86.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 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69조 7,588억 1,800만원, 예산현액은 69조 7,903억 3,600만원이며, 이 중 67조 5,059억 5,7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7%)되었고 259억 7,100만원이 이월, 2조 2,584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68,738,252	68,718,362	66,438,812	25,290	2,254,260	96.7%
일반행정	995,040	969,978	950,460	10,068	9,450	98.0%
기록물관리	44,225	44,242	43,156	109	977	97.5%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317,549	295,984	294,670	241	1,074	99.6%
정부의견	14,075	13,758	12,956	97	705	94.2%
청사관리	235,910	236,621	227,052	7,504	2,065	96.0%
행정안전행정지원	383,281	379,372	372,626	2,118	4,629	98.2%
정부자원관리	752,785	758,256	738,319	14,944	4,993	97.4%
인사관리	167	167	164	0	3	98.4%
전자정부	732,630	736,939	717,487	14,944	4,508	97.4%
정부혁신조직	19,988	21,150	20,668	0	482	97.7%
지방행정·재정지원	66,990,427	66,990,129	64,750,033	278	2,239,817	96.7%
이북5도	1,900	2,134	1,955	0	179	91.6%
지방교부세	66,759,324	66,759,324	64,522,994	0	2,236,330	96.7%
지방자치분권	41,987	41,237	39,431	278	1,528	95.6%
지방자치인재개발	14,224	15,000	14,533	0	467	96.9%
지방재정경제	26,909	26,751	25,465	0	1,286	95.2%
지역발전	146,083	145,683	145,655	0	28	100.0%
공공질서및안전	1,020,566	1,071,973	1,067,141	681	4,152	99.5%
경찰	66,326	66,353	65,486	0	867	98.7%
과학수사	66,326	66,353	65,486	0	867	98.7%
재난관리	954,240	1,005,620	1,001,654	681	3,285	99.6%
안전관리	46,921	42,900	41,122	387	1,390	95.9%
재난관리	674,727	728,153	727,640	0	513	99.9%
재난안전기술개발	85,613	85,613	84,607	0	1,006	98.8%
재난안전정보화	146,979	148,954	148,285	293	377	99.6%
사회복지	-	-	-	-	-	-
취약계층지원	-	-	-	-	-	-
일자리지원	-	-	-	-	-	-
합 계	69,758,818	69,790,336	67,505,953	25,971	2,258,412	9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② 이월·불용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월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불우소외계층격려’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5,400만원 중 19억 800만원(이월률 97.7%)을 이월하였고¹⁾,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7,700만원 중 3,800만원(이월률 49.2%)을 이월하였으며²⁾,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사업은 예산현액 200억 3,400만원 중 74억 5,200만원(이월률 37.2%)을 이월하였고³⁾,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억 5,0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이월률 30.9%)을 이월하였으며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245억 8,300만원 중 55억 9,300만원(이월률 22.8%)을 이월하였음⁵⁾.

1) 사업계획 변경(지급명의 변경)에 따른 계약연장('24.12월말 → '25.1월말)

2) 무기계약직 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집행잔액 이월

3) 폭염, 기초보장 작업 등 공사기간 추가 소요 및 준공 미도래로 잔여액 이월

4)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격려 물품 준비기간 추가 확보 필요에 따른 이월

5)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 사업단계 지연으로 인한 이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불우소외계층격려	1,954	1,954	45	1,908	1	97.7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총액)	77	77	39	38	0	49.2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17,644	20,034	12,556	7,452	26	37.2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 종사자지원	450	450	309	139	2	30.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 센터 신축(정보화)	25,150	24,583	18,982	5,593	8	22.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원을 전액(불용률 100.0%)을 불용하였고⁶⁾,

‘의정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2,900만원 중 1,200만원(불용률 42.2%)을 불용하였으며⁷⁾,

‘재난협력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100만원 중 8,000만원 (불용률 42.0%)을 불용하였고⁸⁾,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4,100만원 중 8,200만원(불용률 33.8%)을 불용하였으며⁹⁾,

6) 예산편성 근거법령 미비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를 사유로 기재부에서 예산 미배정

7) 사회복지요원 복무 중단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8) 사회복지 중대본 근무자 대상 특근매식비 불용 등

‘인사기획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1,700만원 중 500만원(불용률 28.6%)을 불용하였음¹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200	200	0	0	200	100.0
의정관실(총액)	29	29	17	0	12	42.2
재난협력실(총액)	189	191	111	0	80	42.0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94	241	159	0	82	33.8
인사기획관실(총액)	17	17	12	0	5	28.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을 전액(미집행률 100.0%)을 미집행하였고,

‘불우소외계층격려’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5,400만원 중 19억 900만원(미집행률 97.7%)을 미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7,700만원 중 3,800만원(미집행률 49.5%)을 미집행하였고,

9) 위원회 출범 지연에 따른 위원수당 등 위원회 경비(34백만원) 미지출, 민원실 위치 변경(을지로→ 광화문)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차비 절감

10)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의정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2,900만원 중 1,200만원(미집행률 42.2%)을 미집행하였으며,

‘재난협력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100만원 중 8,000만원(미집행률 42.0%)을 미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200	200	0	0	200	200	100.0
불우소외계층격려	1,954	1,954	45	1,908	1	1,909	97.7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총액)	77	77	39	38	0	38	49.5
의정관실(총액)	29	29	17	0	12	12	42.2
재난협력실(총액)	189	191	111	0	80	80	42.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총수입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113억 4,100만원이나 933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53억원이 수납(수납률 91.4%)되었고 80억 2,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계정/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지역자율계정	1,861	17,801	17,771	31	-	99.8
재산수입(11)	28	851	850	2	-	99.9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28	851	850	2	-	99.9
기타재산이자수입(546)	28	851	850	2	-	99.9
경상이전수입(12)	1,833	16,950	16,921	29	-	99.8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49	49	-	-	100.0
과징금(565)	-	49	49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1,833	16,901	16,871	29	-	99.8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833	16,901	16,871	29	-	99.8
지역지원계정	9,480	75,467	67,475	7,991	-	89.4
재산수입(11)	970	3,045	2,753	292	-	90.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970	3,045	2,753	292	-	90.4
기타재산이자수입(546)	970	3,045	2,753	292	-	90.4
경상이전수입(12)	8,510	72,422	64,722	7,699	-	89.4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240	-	240	-	0.0
과징금(565)	-	240	-	240	-	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8,510	72,422	64,722	7,699	-	89.7
기타경상이전수입(596)	8,510	72,422	64,722	7,699	-	89.7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54	54	-	-	100.0
재산수입(11)	-	5	5	-	-	1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	5	5	-	-	100.0
기타재산이자수입(546)	-	5	5	-	-	100.0
경상이전수입(12)	-	49	49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	49	49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6)	-	49	49	-	-	100.0
합 계	11,341	93,322	85,300	8,022	-	91.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나. 총지출

① 총괄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2조 6,885억 3,800만원, 예산현액은 2조 6,886억 9,000만원이며, 이 중 2조 6,844억 4,6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2억 2,700만원이 이월, 40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1,647,843	1,647,880	1,644,956	183	2,742	99.8
정부자원관리	19,275	19,275	19,212	0	63	99.7
정부혁신조직	19,275	19,275	19,212	0	63	99.7
지방행정·재정지원	1,628,568	1,628,605	1,625,743	183	2,679	99.8
지방자치분권	26,987	26,987	26,640	83	265	98.7
지방재정경제	300,000	300,000	299,993	0	7	100.0
지역발전	1,301,581	1,301,618	1,299,110	100	2,408	99.8
공공질서및안전	956,164	956,164	954,972	0	1,192	99.9
재난관리	956,164	956,164	954,972	0	1,192	99.9
안전관리	948,144	948,144	946,952	0	1,192	99.9
재난안전기술개발	8,020	8,020	8,020	0	0	100.0
사회복지	84,531	84,646	84,519	44	83	99.9
취약계층지원	84,531	84,646	84,519	44	83	99.9
일자리지원	84,531	84,646	84,519	44	83	99.9
합계	2,688,538	2,688,690	2,684,446	227	4,017	9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 2024회계연도 이월이 있었던 사업은 총 3개 세부사업임.

□ ‘지방시대위원회’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 중 8,300만원 (이월률 5.1%)을 이월하였고,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99억 6,500만원 중 1억원(이월률 1.0%)을 이월하였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예산현액 757억 6,500만원 중 4,400만원(이월률 0.1%)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이월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636	1,636	1,291	83	262	5.1
지역발전활성화	9,928	9,965	9,545	100	320	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5,650	75,765	75,638	44	83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 중 2억 6,200만원(불용률 16.0%)을 불용하였고,

‘접경권발전지역’ 사업은 예산현액 498억 4,900만원 중 20억 1,300만원(불용률 4.0%)을 불용하였으며,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99억 6,500만원 중 3억 2,000만원(불용률 3.2%)을 불용하였고,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715억 4,400만원 중 11억 9,200만원(불용률 1.7%)을 불용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 중 100만원(불용률 0.6%)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636	1,636	1,291	83	262	16.0
접경권발전지원	49,849	49,849	47,836	0	2,013	4.0
지역발전활성화	9,928	9,965	9,545	100	320	3.2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71,544	71,544	70,352	0	1,192	1.7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200	199	0	1	0.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 중 3억 4,500만원(미집행률 21.1%)을 미집행하였고,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99억 6,500만원 중 4억 2,000만원(미집행률 4.2%)을 미집행하였으며,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98억 4,900만원 중 20억 1,300만원(미집행률 4.0%)을 미집행하였고,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715억 4,400만원 중 11억 9,200만원(미집행률 1.7%)을 미집행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 중 100만원(미집행률 0.6%)을 미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636	1,636	1,291	83	262	345	21.1
지역발전활성화	9,928	9,965	9,545	100	320	420	4.2
접경권발전지원	49,849	49,849	47,836	0	2,013	2,013	4.0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71,544	71,544	70,352	0	1,192	1,192	1.7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200	199	0	1	1	0.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예비비 지출

□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에 예비비 1억 4,700만원을 배정받았음.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2024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자산총액은 11조 9,424억 7,500만원으로, 전기 말 대비 2,144억 9,200만원(1.8%)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일반유형자산의 감소(2,032억 4,200만원), 무형자산의 감소(163억 3,200만원) 등에 있음.

□ 부채총액은 1,793억 9,2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246억 5,700만원(4.2%)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장기차입부채가 156억 3,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7,630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1억 4,800만원(2.0%)이 감소하였음.

[2024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증 감액(C=A-B)	증 감율(C/B)
I. 자산(a)	11,942,475	12,156,967	(214,492)	(1.8 %)
· 유동자산	105,225	105,347	(122)	(0.1 %)
· 투자자산	14,315	9,325	4,990	53.5 %
· 일반유형자산	11,448,867	11,652,109	(203,242)	(1.7 %)
· 무형자산	368,787	385,119	(16,332)	(4.2 %)
· 기타비유동자산	5,281	5,066	215	4.2 %
II. 부채(b)	179,392	154,735	24,657	15.9 %
· 유동부채	66,075	57,050	9,025	15.8 %
· 장기차입부채	113,316	97,685	15,631	16.0 %
· 장기충당부채	-	-	-	-
순자산(a-b)	11,763,084	12,002,232	(239,148)	(2.0 %)

※ 2024(A)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2023(B) : 2023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70,228,336

- ☐ 2024년도 행정안전부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69조 8,572억 9,900만원 및 관리운영비 4,410억 6,300만원, 비배분비용 37억 9,8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729억 2,400만원을 차감한 70조 2,283억 3,600만원이며, 비교환수익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와 동일한 70조 2,283억 3,600만원임.

[2024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69,857,299	72,414,834	(2,557,535)	(3.5 %)
II. 관리운영비	440,163	426,460	13,703	3.2 %
III. 비배분비용	3,798	1,361	2,437	179.1 %
IV. 비배분수익	72,924	132,785	(59,861)	(45.1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70,228,336	72,709,871	(2,481,535)	(3.4 %)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70,228,336	72,709,871	(2,481,535)	(3.4 %)

※ 2024(A)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3(B)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 행정안전부의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1조 7,630억 8,400만원이며, 2024년 기초순자산은 12조 22억 3,2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70조 2,283억 3,6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70조 916억 1,000만원, 조정항목은 - 1,024억 2,200만원임.

[2024년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일반회계+특별회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A)	2023(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기초순자산	12,002,232	11,729,588	272,644	2.3 %
II. 재정운영결과	70,228,336	72,709,871	(2,481,535)	(3.4 %)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70,091,610	73,034,653	(2,943,043)	(4.0 %)
IV. 조정항목	(102,422)	(52,138)	(50,284)	(96.4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1,763,084	12,002,232	(239,148)	(2.0 %)

※ 2024(A)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3(B)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 성인지 결산

-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은 여성 지방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지원, 재난상황에 여성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4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34억 7,000만원이고 집행액은 34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8%임.

[2024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 계	세부사업명	2024년			2023년 지출액 (c)	전년대비 증감 (d=b-c)	전년대비 증감률 (d/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소계(A)		3,470	3,429	98.8	1,438	1,991	138.5
일 반 회 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560	557	99.5	577	△20	△3.5
	- 여성리더양성·심화 과정운영 ¹⁾²⁾	560	557	99.5	577	△20	△3.5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²⁾	519	499	96.1	452	47	10.3
	(3)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2,100	2,100	100.0	-	2,100	-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²⁾	291	273	93.8	409	△136	△33.3
특별회계소계(B)		-	-	-	-	-	-
성별영향평가사업소계		-	-	-	-	-	-
직접목적사업소계		2,910	2,872	98.7	861	2,011	233.6
합 계(A+B)		3,470	3,429	98.8	1,438	1,991	138.5

자료 : 행정안전부 세출자료

1) 직접목적 사업

2) 성별영향평가 사업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 ☐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

7. 지방교부세 결산

-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¹¹⁾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같은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단위: 백만원, %)

구분		목적	재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2024회계연도 지방교부세는 총 66조 7,593억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96.7%인 64조 5,229억 9,400만원이 교부(집행)되었음. 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수입에 결손이 발생하여 그에 연동된 보통교부세는 예산대비 96.6%(예산 59조 8,439억 1,700만원 중 57조 7,932억원)만 교부되었고,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예산대비 96.6%(예산 7,403억 3,700만원 중 7,150억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예산대비 96.6%(예산 1,850억 8,400만원 중 1,788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예산대비 96.6% (예산 9,254억 2,100만원 중 8,936억 9,900만원) 등이 각각 교부되었기 때문임.¹²⁾

12)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정산함.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024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보통교부세(1631-300)		59,843,917	57,793,200	-	2,050,717	96.6
특별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740,337	715,000	-	25,337	96.6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185,084	178,800	-	6,284	96.6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925,421	893,699	-	31,722	96.6
부동산교부세(1633-300)		4,109,800	4,109,800	-	-	100.0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54,765	832,495	-	122,270	87.2
합계		66,759,324	64,522,994	0	2,236,330	9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 이 중 보통교부세 미교부의 경우, 2013년 2,500억원(예산 대비 0.7%)이 미교부된 후 2023년에 10년만에 다시 10.8% 미교부가 발생하였고, 2024년에도 3.4% 미교부가 발생한 것임.

[2013~2024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교부액 (B)	미교부액	교부율 (B/A)
2013	35,535,947	35,258,947	250,000	99.3
2014	35,698,180	35,698,180	0	100.0
2015	32,926,185	32,926,185	0	100.0
2016	35,023,661	35,023,661	0	100.0
2017	39,222,628	39,222,628	0	100.0
2018	42,469,616	42,469,616	0	100.0
2019	47,602,635	47,602,635	0	100.0
2020	44,896,524	44,896,524	0	100.0
2021	50,252,142	50,252,142	0	100.0
2022	65,517,054	65,517,054	0	100.0
2023	66,644,552	59,475,700	7,168,852	89.2
2024	59,843,917	57,793,200	2,050,717	96.6

주) 2014년 이전에 모든 유형의 지방교부세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 → 2013~2014년은 모든 지방교부세를 합산한 수치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 특별교부세의 경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액 전액에 교부되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액 중 633억 4,300만원(예산 대비 3.4%)이 미교부되었음.

[2013~2024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교부액 (B)	미교부액	교부율 (B/A)
2013	1,310,331	1,310,331	-	100.0
2014	986,119	986,119	-	100.0
2015	987,407	987,407	-	100.0
2016	1,083,206	1,083,206	-	100.0
2017	1,213,070	1,213,070	-	100.0
2018	1,313,493	1,313,493	-	100.0
2019	1,472,247	1,472,247	-	100.0
2020	1,389,478	1,389,478	-	100.0
2021	1,554,190	1,554,190	-	100.0
2022	2,026,300	2,026,300	-	100.0
2023	2,061,172	2,061,172	-	100.0
2024	1,850,842	1,787,499	63,343	96.6

주) 1)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

2) 교부액은 정산분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 참고로, 보통교부세 미교부가 발생한 2013년, 2023년 및 2024년 국
세수입은 예산액 대비 각각 96.0%, 85.9%, 91.6%만 수납되는 결손
이 발생하였음.

[2013~2024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수납율
2013	210.4	201.9	96.0
2014	216.5	205.5	94.9
2015	215.7	217.9	101.0
2016	232.7	242.6	104.2
2017	251.1	265.4	105.7
2018	268.1	293.6	109.5
2019	294.8	293.5	99.5
2020	279.7	285.5	102.1
2021	314.3	344.1	109.5
2022	396.6	395.9	99.8
2023	400.5	344.1	85.9
2024	367.3	336.5	91.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1) 총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0억 1,700만원으로, 69억 2,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81.8%인 56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5,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합계	10,017	6,929	5,671	56.6	81.8	1,258
재산수입	38	39	39	102.6	100.0	-
경상이전수입	9,969	6,847	5,589	56.1	81.6	1,25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	43	43	430.0	100.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세입 주요내역

□ 2024회계연도 세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3,900만원,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경상이전수입” 55억 8,900만원, 잡수입인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입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과부족 (B-A)	세 부 내 역
합 계		10,017	6,929	5,671	△4,346	
◦	재산수입	38	39	39	1	
	▪ 토지대여료	23	15	15	△8	국유재산 허가 사용료
	▪ 기타관유물대여료	5	4	4	△1	임차 관사 등 허가 사용료
	▪ 기타재산이자수입	10	19	19	9	금융기관 예치이자액 등
◦	경상이전수입	9,969	6,847	5,589	△4,380	
	▪ 과 태 료	400	300	241	△149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 변 상 금	3	2	2	△1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위 약 금	-	281	280	280	계약해지관련 계약보증금등
	▪ 가 산 금	1	1	1	-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채납에 따른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9,565	6,263	5,065	△4,500	후보자 기탁금, 선거보전비용반환금 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	43	43	33	
	▪ 기타잡수익	10	43	43	33	선거장비 매각대금 등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결산액은 5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8억 7,100만원 대비 550.7% 증가하였음.
- 이는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C/A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4년	10,017	6,929	5,671	56.6	81.8	1,258	-
2023년	863	2,180	871	101.0	40.0	1,293	16
증감율	1060.7	217.8	550.7	-	-	△2.7	△1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년도에는 세입예산액 100억 1,700만원의 56.6%인 56억 7,1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미달하였음.

□ 한편,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징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및 2024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에 미달하였고, 기타연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을 초과함.

[최근 5년간 세입예산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과부족 (C-A)	징수율 (C/A)
2020년	10,465	12,347	12,215	1,750	116.7
2021년	1,537	2,812	1,145	△392	74.5
2022년	4,035	8,099	6,679	2,644	165.5
2023년	863	2,180	871	8	101.0
2024년	10,017	6,929	5,671	△4,346	56.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처럼 징수율 변동 차가 큰 데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실시 여부 및 후보자수 등에 따라 연도별 세입액 편차가 크고, 기탁금 국고귀속액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및 과태료는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나. 세출결산

(1) 총 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8,572억 2,700만원 이고, 전년도 이월액 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572억 2,8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8,54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의 0.3%인 26억 8,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총 계	399,967	857,227	857,227	857,228	854,516
<1100선거의공정한관리계>	113,247	560,798	560,798	557,510	556,790
<1131공직선거관리계>	47,964	434,171	434,171	441,284	441,079
• 대통령선거(1131-300)	-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932	280,992	280,992	287,731	287,613
• 전국동시지방선거(1131-302)	-	-	-	-	-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1,597	163	163	93	90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 재외선거관리(1131-305)	7,451	9,891	9,891	8,556	8,539
• 위탁선거관리(1131-306)	488	258	258	240	230
• 선거보전금(1131-307)	-	107,224	107,224	109,406	109,380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35,496	35,643	35,643	35,258	35,227
<1132정당발전지원계>	47,843	110,154	110,154	101,072	101,068
• 정당사무지원(1132-320)	214	80	80	69	65
• 정당보조금(1132-322)	47,629	110,074	110,074	101,003	101,003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계>	16,575	15,720	15,720	14,493	13,998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484	1,266	1,266	1,006	920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391	1,369	1,369	1,247	1,213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2,120	1,354	1,354	1,170	1,155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1,318	10,947	10,947	10,286	10,024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262	784	784	784	685
<1135선거관리지원계>	865	753	753	660	64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15	102	102	102	97
• 선거방송토론(1135-314)	460	358	358	275	271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90	293	293	283	277
<7100선거관리행정지원계>	286,721	296,429	296,429	299,718	297,726
<7101인건비계>	211,801	221,572	221,572	224,502	224,138
• 인건비(7101-150)	211,801	221,572	221,572	224,502	224,138
<7111기본경비계>	15,599	15,383	15,383	15,015	14,540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5,599	15,383	15,383	15,015	14,540
<7132기관운영지원계>	52,489	52,442	52,442	53,170	52,280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85	442	442	425	418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760	644	644	614	589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524	412	412	402	393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2,274	1,442	1,442	1,427	1,413
• 국제교류협력(7132-345)	963	1,130	1,130	1,118	1,099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77	164	164	164	164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1,519	987	987	952	917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6,483	19,500	19,500	19,500	19,228
• 위원회운영(7132-351)	2,219	1,761	1,761	1,708	1,685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2,036	2,001	2,001	1,987	1,947
• 청사관리(7132-354)	25,049	23,959	23,959	24,873	24,426
<7136선거행정정보화계>	6,768	6,836	6,836	6,836	6,769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555	563	563	563	528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213	6,273	6,273	6,273	6,241
<7137예비금계>	64	196	196	196	0
• 예비금(7137-430)	64	196	196	196	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전용 등

(가) 이·전용

- 2024회계연도 이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1%인 9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하였음. 주요 내역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49억 7,400백만원, 국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30억 1,3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3억 2,8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7%인 148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전용액 36억 7,300만원 대비 304.8% 증가하였음. 주요 내역은 국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111억 3,000만원, 부담비용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23억 6,7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액 9억 6,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전용(C)	C/A
합 계	857,227	857,228	24,183	2.8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560,798	557,510	16,553	3.0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6,429	299,718	7,630	2.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회계연도 이·전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9,315	-	9,315	순증
전 용	14,868	3,673	11,195	30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이 월

□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 유예금액임.

[2024회계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월액(C)	C/A
합 계	560,798	557,510	26	0.005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560,798	557,510	26	0.00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회계연도 이월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26	1	25	3,736.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불 용

-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 수준인 2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68억 5,500만원 대비 60.8% 감소하였음.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1억 7,900만원, 정당발전지원 4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4억 9,600만원, 선거관리지원 1,500만원, 인건비 3억 6,400만원, 기본경비 4억 7,400만원, 기관운영지원 8억 9,0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6,700만원, 예비금 1억 9,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불용액(C)	C/A
합 계	857,227	857,228	2,685	0.3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560,798	557,510	694	0.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6,429	299,718	1,991	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회계연도 불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2,685	6,855	4,170	△6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예비금

□ 2024회계연도 예비금 예산액은 1억 9,600만원으로, 전액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비금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금	196	-	-	1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가) 세출결산 전반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8,572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72억 2,800만원임. 이 중 99.7%인 8,54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0.003%인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0.3%인 26억 8,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 이월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D)		불용액(E)	
					금액	(C/A)	(C/B)	금액	(D/B)	금액	(E/B)
857,227	1	-	±37,066	857,228	854,516	99.7	99.7	26	0.003	2,685	0.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국단위 공직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관리 비용 등 주요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공직선거관리 4,410억 7,900만원, 정당발전지원 1,010억 6,8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39억 9,800만원, 선거관리지원 6억 4,500만원, 인건비 2,241억 3,800만원, 기본경비 145억 4,000만원, 기관운영지원 522억 8,0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67억 6,900만원임.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금액	(C/A)	(C/B)		
2020년	725,084	742,820	710,729	98.0	95.7	33	32,059
2021년	385,228	385,261	359,938	93.4	93.4	64	25,259
2022년	870,615	870,679	839,892	96.5	96.5	122	30,665
2023년	406,700	406,822	399,967	98.3	98.3	1	6,855
2024년	857,227	857,228	854,516	99.7	99.7	26	2,68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대비 113.6% 증가한 8,545억 1,600만원으로 이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 공직

선거 실시로 선거관리경비 및 선거보조금 등 세출예산액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액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 둘째, 이용액은 전년대비 순증하였으며, 전용액은 148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4.8% 증가하였음.

(나) 이 · 전용

- 2024회계연도 이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1%인 9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하였음. 주요 내역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49억 7,400백만원, 국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30억 1,3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3억 2,8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7%인 148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전용액 36억 7,300만원 대비 304.8% 증가하였음. 주요 내역은 국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111억 3,000만원, 부담비용 증가에 따른 선거보조금 부족액 23억 6,7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액 9억 6,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이 ·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9,315	-	9,315	순증
전 용	14,868	3,673	11,195	30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전용액의 비율을 보면 2022년도 및 202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 미만이며, 2022년도 이·전용액 증가 사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등 부족,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등 부족,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에 따른 지급 재원 등이 부족임. 또한 2024년도 이·전용액 증가 사유는 국회의원선거 경비 부족, 공무원 보수 부족, 청사 공공요금 부족, 부담비용 청구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재원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 산 액	725,084	385,228	870,615	406,700	857,227
이·전용액	7,082	257	81,349	3,673	24,183
예산액 대비 이·전용액 비율	0.98	0.07	9.3	0.9	2.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전용 사유	이·전용액
2020년	계	7,082
	▪ 코로나19 대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물품 구입	5,000
	▪ 공정선거지원단 고용부담금 부족	84
	▪ 선거공보 발송 등 우편요금 부족	1,915
	▪ 사회복지요원 여비 부족	52
	▪ 대체청사 담장붕괴에 따른 차량피해 손실보상금 소요	20
	▪ 선거전용통신망 사업비 분석 용역 관련 부족	11

연 도	이 · 전용 사유	이 · 전용액
2021년	계	257
	▪ 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낙상사고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1
	▪ 공공요금 부족	207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부족	11
	▪ 유권자의식조사 연구용역비 부족액	11
	▪ 사회복지무요원 여비 부족액	11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 실비	7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인식개선프로그램 개발비 부족	6
	▪ 국가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비 부족	3
2022년	계	81,349
	▪ 제20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관련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부족(이용 4,384, 전용 50,182)	54,566
	▪ 코로나19 예방·대책비용 전용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17,400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및 보전금 부족	4,940
	▪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재원 부족	4,400
	▪ 유상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28
	▪ 기타직보수 부족	15
2023년	계	3,673
	▪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 비용	2,657
	▪ 4분기 기관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1,015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비용	1
2024년	계	24,183
	▪ 수검표 도입 및 (사전)투표 참관인 증가 등에 따른 국선 선거경비	14,181
	▪ 공무원 보수 부족액	5,943
	▪ 부담비용 청구대상 정당수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2,368
	▪ 각급위원회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475
	▪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컨설팅 재원 부족액	140
	▪ 직원 상시학습 여비 부족액	72
	▪ 재외선거관련 인력운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액	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이 월

□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 증가하였음.

[2024년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26	1	25	3736.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의 비율을 보면, 2020년도에는 0.004%, 2021년도에는 0.06%, 2022년도에는 0.01%, 2023년도에는 0.001%, 2024년도에는 0.003%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이월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 산 액	725,084	385,228	870,615	406,700	857,227
이 월 액	33	64	122	1	26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	0.004	0.06	0.01	0.001	0.00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월사유	이월액
2020년	계	33
	▪ 선거물품 집중보관용역 대금 미지급금	26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유예금	7
2021년	계	64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선거장비 지원센터 운반장비(지게차 및 핸드파레트) 납품 지연에 따른 대금 미지급금	64
2022년	계	12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 등 납품 지연에 따라 발생한 공기연장에 대한 미지급금	122
2023년	계	1
	▪ 12월 카드사용분 대금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금	1
2024년	계	26
	▪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 유예금	2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불 용

□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2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68억 5,500만원 대비 60.8% 감소하였음. 불용내역은 주로 집행잔액이며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1억 7,900만원, 정당발전지원 4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4억 9,600만원, 선거관리지원 1,500만원, 인건비 3억 6,400만원, 기본경비 4억 7,400만원, 기관운영지원 8억 9,000만원, 선거 행정 정보화 6,700만원, 예비금 1억 9,600만원임.

[2024년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2,685	6,855	4,170	△6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20년도 이후 5.0% 내외의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22년도 이후는 불용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 액	725,084	385,228	870,615	406,700	857,227
불 용 액	32,059	25,259	30,665	6,855	2,685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	4.4	6.6	3.5	1.7	0.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불용액 및 불용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불용사유	불용액
2020년	계	32,059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2,240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12,046
	▪ 인건비 집행잔액	4,035

연 도	불용사유	불용액
	▪ 재외선거관리 집행잔액	2,233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1,505
2021년	계	25,259
	▪ 인건비 집행잔액	13,694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규모 축소·미실시	7,61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3,950
2022년	계	30,665
	▪ 정당보조금 집행잔액	5,624
	▪ 인건비 집행잔액	3,706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2,27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9,060
2023년	계	6,855
	▪ 인건비 집행잔액	1,153
	▪ 기타 269개 위원회 집행잔액	5,702
2024년	계	2,685
	▪ 인건비 집행잔액	364
	▪ 전산운영경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72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263
	▪ 270개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1,78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프로그램

(가)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1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은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및 “선거관리행정지원(7100)”의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프로그램은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아래 표와 같이 i) 공직선거관리(1131), ii) 정당발전지원(1132), iii)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1133), iv) 선거관리지원(1135)의 4개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1공직선거관리계>	47,964	434,171	434,171	441,284	441,079
• 대통령선거(1131-300)	-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932	280,992	280,992	287,731	287,613
• 전국동시지방선거(1131-302)	-	-	-	-	-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1,597	163	163	93	90
• 재외선거관리(1131-305)	7,451	9,891	9,891	8,556	8,539
• 위탁선거관리(1131-306)	488	258	258	240	230
• 선거보전금(1131-307)	-	107,224	107,224	109,406	109,380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35,496	35,643	35,643	35,258	35,227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2정당발전지원계>	47,843	110,154	110,154	101,072	101,068
• 정당사무지원(1132-320)	214	80	80	69	65
• 정당보조금(1132-322)	47,629	110,074	110,074	101,003	101,003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계>	16,575	15,720	15,720	14,493	13,998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484	1,266	1,266	1,006	920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391	1,369	1,369	1,247	1,213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2,120	1,354	1,354	1,170	1,155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1,318	10,947	10,947	10,286	10,024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262	784	784	784	685
<1135선거관리지원계>	865	753	753	660	64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115	102	102	102	97
• 선거방송토론(1135-314)	460	358	358	275	271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90	293	293	283	27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7100)

□ “선거관리행정지원(7100)” 프로그램은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경비 지원,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민주적 선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아래 표와 같이, i) 인건비(7101), ii) 기본경비(7111), iii) 기관 운영지원(7132), iv) 선거행정정보화(7136), v) 예비금(7137)의 5개의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회계연도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7101인건비계>	211,801	221,572	221,572	224,502	224,138
• 인건비(7101-150)	211,801	221,572	221,572	224,502	224,138
<7111기본경비계>	15,599	15,383	15,383	15,015	14,540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5,599	15,383	15,383	15,015	14,540
<7132기관운영지원계>	52,489	52,442	52,442	53,170	52,280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85	442	442	425	418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760	644	644	614	589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524	412	412	402	393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2,274	1,442	1,442	1,427	1,413
• 국제교류협력(7132-345)	963	1,130	1,130	1,118	1,099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77	164	164	164	164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1,519	987	987	952	917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6,483	19,500	19,500	19,500	19,228
• 위원회운영(7132-351)	2,219	1,761	1,761	1,708	1,685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2,036	2,001	2,001	1,987	1,947
• 청사관리(7132-354)	25,049	23,959	23,959	24,873	24,426
<7136선거행정정보화계>	6,768	6,836	6,836	6,836	6,769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555	563	563	563	528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213	6,273	6,273	6,273	6,241
<7137예비금계>	64	196	196	196	0
• 예비금(7137-430)	64	196	196	196	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자산은 7,859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음. 유동 자산은 50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급보증금 등 기타유동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투자자산은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투자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일반유형자산은 7,550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물의 취득 및 정부내자산수증, 구축물·기계장치에 대한 취득, 미완공청사가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무형자산은 109억 9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이는 외부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시스템구축 등 내부개발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기타비유동자산은 148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8%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기선급비용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는 60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5% 감소하였음. 유동부채는 33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으며, 이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장기차입부채는 26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9% 감소하였으며, 이 역시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순자산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7,799억 400만원이며 전년대비 5.0%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재정상태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	785,935	752,452	33,483	4.4
부 채	6,031	9,501	△3,470	△36.5
순자산	779,904	742,951	36,953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8,713억 1,5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0.3% 증가함. 프로그램 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으로 5,341억 5,9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01.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단위 공직선거 실시에 따른 경비의 증가에 기인함. 관리운영비는 3,391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임. 비배분수익은 20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2%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수익 증가에 기인한 것임.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534,159	88,851	445,308	501.2
II. 관리운영비	339,196	326,399	12,797	3.9
III. 비배분비용	2	18	△16	△88.9
IV. 비배분수익	2,042	1,000	1,042	104.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71,315	414,269	457,046	110.3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71,315	414,269	457,046	110.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기말순자산액 7,799억 400만원은 기초순자산액 7,429억 5,1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인 8,713억 1,500만원을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액
9,100억 9,600만원과 조정항목 △18억 2,800만원을 더한 값임.

[2024회계연도 순자산변동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742,951	701,495	41,456	5.9
II. 재정운영결과	871,315	414,269	457,046	110.3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910,096	456,205	453,891	99.5
IV. 조정항목	△1,828	△480	△1,348	△280.8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779,904	742,951	36,953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순자산변동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2024년 주요순자산 변동내역 및 금액]

- 기초순자산	742,951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871,315 백만원
- 재원의 조달	916,303 백만원
• 국고수입	854,516 백만원
• 제재금수익	545 백만원
• 기타비교환수익	3,882 백만원
• 무상이전수입	512 백만원
• 기타재원조달	56,848 백만원
- 재원의 이전	6,207 백만원
• 국고이전지출	5,671 백만원
• 무상이전지출	537 백만원
- 조정항목	△1,828 백만원
• 자산재평가이익	△1,828 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성인지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인지 사업은 공공부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로 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1억 6,800만원 이고 집행액은 9,200만원으로 집행률은 55.0%임.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인지 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3년 (c)	'24년 집행액(c)			전년 대비 증감 (b-c)	전년 대비 증감률 (b-c/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 소계(A)	68	168	92	55.0	24	35.6
일반 회계	(1)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여성 정치참여 교육	68	168	92	55.0	24	35.6
	특별회계 소계(B)	-	-	-	-	-	-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	-	-	-	-	-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68	-	-	-	-	-
	합 계(A+B)	68	168	92	55.0	24	35.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1억 7,800만원¹³⁾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600만원을 수납함.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	178	96	-	82	54.0
합 계	-	178	96	-	82	54.0

1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 178,024,620원

나. 세 출

(1) 총 괄

-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었음. 세출예산현액은 180억 3,0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 대비 92.8%인 16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00만원, 불용액은 9억 9,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이체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B/A (%)	C/A (%)
본예산	추경										
16,749	16,749	-	1,281	-	±371	18,030	16,728	309	993	92.8	5.5

- 동 세출예산은 ‘진실화해위원회 운영’과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운영 단위사업(진화위운영 세부사업 1개)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 및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6,749	16,749	1,281	±371	18,030	16,728	99.9	16,763
1000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계	3,429	3,429	1,260	-	4,689	3,435	100.2	3,266
1031 진 화 위 운영	3,429	3,429	1,260	-	4,689	3,435	100.2	3,266
진 화 위 운영 (1031-300)	3,429	3,429	1,260	-	4,689	3,435	100.2	3,266
7000 진실화해위원회 행 정 지 원 계	13,320	13,320	21	±371	13,341	13,293	99.8	13,497
7001 진 화 위 인 건 비	6,520	6,520	-	371	6,891	6,883	105.6	6,811
진 화 위 인 건 비 (7001-150)	6,520	6,520	-	371	6,891	6,883	105.6	6,811
7002 진 화 위 기 본 경 비	6,800	6,800	21	△ 371	6,450	6,410	94.3	6,686
진 화 위 기 본 경 비 (7002-250)	6,800	6,800	21	△ 371	6,450	6,410	94.3	6,686

(2) 이·전용

□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소요¹⁴⁾가 발생하여 3억 7,100만 원을 전용¹⁵⁾함.

14)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별정직, 전문임기제) 경력반영 등에 따라 직급별 연봉 및 호봉의 평균단가 차이가 발생하여 보수 실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었음.

15)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 내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진화위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부터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진화위인건비 세부사업)으로 3억 7,100만 원을 전용함.

(3) 이 월

-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3억 900만원으로, 이월 내역으로는 유해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2억 1,100만원, 2024년 OTT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9,200만원, 사건조사용 인공지능 문자인식 SW 사용구독 계약 600만원임.

[전년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309	• 계약기간 미도래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용역계약 3건 사고이월
진화위운영 (1031-300)	309	• 유해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211)
		• 2024년 OTT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92)
		• 사건조사용 인공지능 문자인식 SW 사용구독 계약 (6)

(4) 불 용

- 불용액은 9억 9,300만원으로 불용내역은 진화위운영비 9억 4,500만원, 진화위인건비 800만원, 진화위기본경비 4,000만원임.

2. 예비비 지출

☐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

3. 재무결산

☐ 진실화해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 2024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자산은 3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42억 9,2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 감소하였음.

☐ 이는 일반유형자산 1억 1,500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감소와 소프트웨어 감가상각으로 인해 유동자산 및 무형자산이 각각 8억 4,200만원, 1억 6,9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4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채는 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1,000만원보다 4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퇴직금 지급대상자 근속연수 증가, 복구충당부채 설정 등으로 장기충당부채가 4억 3,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28억 5,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3억 2,800만원 감소함.

[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자산(a)	3,396	4,292	-896	-20.9
· 유동자산	672	1,514	-842	-55.6
· 투자자산	-	-	-	-
· 일반유형자산	880	765	115	15.0
· 무형자산	259	428	-169	-39.5
· 기타비유동자산	1,585	1,585	-	-
II. 부채(b)	542	110	432	392.7
· 유동부채	-	-	-	-
· 장기차입부채	-	-	-	-
· 장기충당부채	542	110	432	392.7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2,854	4,182	-1,328	-31.8

※ 2024(A)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2023(B) : 2023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 종류에 대한 설명]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재정운영 결과	

- ☐ 2024년도 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46억 6,600만 원에 관리운영비 146억 900만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1억 6,200만 원을 차감한 191억 1,300만원임.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순원가는 연구개발용역비 등 증가로 전기대비 10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는 인건비가 전기대비 3억 6,700만원 증가하고 관리용역비 등 기타경비가 11억 9,300만원 증가하여 전기대비 15억 6,000만원 증가함. 비배분수익은 지출금반납금이 발생하여 전기대비 1억 3,200만원 증가함.

[2024년도 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4,666	3,596	1,070	29.8
가. 프로그램 총원가	4,666	3,596	1,070	29.8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4,609	13,049	1,560	12.0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62	30	132	440.0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9,113	16,615	2,498	15.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9,113	16,615	2,498	15.0

※ 2024(A)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3(B)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 위원회의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4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34억 7,200만원보다 7억 1,000만원 증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재원의 조달은 178억 8,100만원으로 국고수입 2억 7,3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4억 1,0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이전은 정부내자산기부 감소로 전기대비 5,0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77억 8,500만원으로 전기대비 4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91억 1,300만원으로 전기대비 24억 9,800만원 증가하여 당기 기말 순자산은 28억 5,400만원임.

[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4,182	3,472	710	20.4
II. 재정운영결과	19,113	16,615	2,498	15.0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7,785	17,325	460	2.7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854	4,182	-1,328	-31.8

※ 2024(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3(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 2024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은 없음.

나. 세 출

(1) 총 괄

-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9,000만원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5월 2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13일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액이 전액 예비비로 배정(2024.10. 2.)되었음.
- ☐ 이 가운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8.2%인 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 연 도 이월액	불 용 액 (C)	집행률 B/A (%)	불용률 C/A (%)
본예산	추경									
-	-	-	890	± 56	890	785	-	105	88.2	11.8

* 이용, 전용, 이체, 조정 등

※ 수치는 단수조정에 따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 전 용

-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의한 전용액은 5,600만원으로 예비비 편성 당시 (2024. 8.) 3개월(2024. 9.~11.)로 예상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운영기간이 시행령 제정 지연으로 연장됨에 따라 12월 분 임차료(210-07) 및 직책수행경비(250-02) 부족분을 각각 자산취득비(430-01) 및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서 충당한 것임.

[2024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2.13)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100)	자산취득비 (430-01)	55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100)	임차료 (210-07)
전용 (2024.12.2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1		직책수행 경비 (250-02)

(3) 이 월

다음연도 이월액은 원인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

(4) 불 용

□ 불용액은 예산현액 8억 9,000만원의 11.8%인 1억 500만원으로, 구체적인 불용 사유는 민간직원 채용계획변경, 진상규명조사 개시 지연으로 여비 집행률 저조, 위원회 운영 일정 지연에 따른 건설비 미집행 등임.

[2024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비 목	내 역	금 액
불용 내역	일용임금(110-04)	• 민간직원 채용계획 변경(14명→4명)에 따른 집행률 저조	30
	고용부담금(320-09)		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집행잔액	5
	특근매식비(210-05)		3
	임차료(210-07)		6
	국내여비(220-01)	• 시행령 제정 지연으로 진상규명조사 개시가 지연되어 여비 집행률 저조	22
	공사비(420-03)	• 위원회 운영 일정 지연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일정 변경으로 건설비 미집행	34
합 계			105

2. 예비비 지출

- 2024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예비비 사용 내역은 세출예산 사용 내역과 동일함.

[2024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용승인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890	785	-	105
합 계	890	785	-	105

3. 재무결산

- ☐ 특별조사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 ☐ 2024년말 기준 특별조사위원회 자산총액은 2억 1,9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1억 300만원으로, 순자산 총액은 1억 1,600만원임.

[2024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조직개편일 (B)	증 감	
			금액 (A-B)	비율 (A-B)/B
I. 자산(a)	219	-	219	100
· 유동자산	4	-	-	-
· 투자자산	-	-	-	-
· 일반유형자산	156	-	156	100
· 무형자산	59	-	59	100
· 기타비유동자산	-	-	-	--
II. 부채(b)	103	-	103	100
· 유동부채	3	-	3	100
· 장기차입부채	-	-	-	-
· 장기충당부채	100	-	100	100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116	-	116	100

※ 2024(A)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조직개편일(B) : 2024년 5월 21일자 잔액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 2024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순원가 6억 8,700만원과 동일함.

[2024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I. 프로그램순원가	687
가. 프로그램 총원가	687
나. 프로그램 수익	-
II. 관리운영비	-
III. 비배분비용	-
IV. 비배분수익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687
VI. 비교환수익 등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87

※ 2024년 : 2024. 5.21.(조직개편일)부터 2024.12.31.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 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것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 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 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 특별조사위원회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억 1,6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6억 8,700만원, 재원의 조달 8억 3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구체적으로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액 7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무상이전수입 1,400만원, 기타재원조달 400만원으로 구성됨.

[2024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I. 기초순자산	-
II. 재정운영결과	687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803
IV. 조정항목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16

※ 2024년 : 2024. 5.21.(조직개편일)부터 2024.12.31.까지

【인사혁신처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20억 1,600만원이며, 429억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8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200만원이며, 8,2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수납액은 예산현액에 비해 8억 1,000만원 많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증 감 (B-A)
재 산 수 입	4	9	9	-	-	5
경상이전수입	1,349	2,049	1,966	2	82	617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145	984	984	-	-	△161
수입대체경비수입	4,029	4,378	4,378	-	-	349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5,489	35,489	35,489	-	-	-
합 계	42,016	42,909	42,826	2	82	810

나. 세 출

(1) 총 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5조 8,052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5조 7,995억 8,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57억 1,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B/A (%)	C/A (%)
• 자체 지출	224,742	-	-	±154	-	224,742	219,028	-	5,714	97.5	2.5
- 인재채용	23,828	-	-	-	-	23,828	23,347	-	481	98.0	2.0
- 인재개발	45,560	-	-	-	-	45,560	45,442	-	118	99.7	0.3
- 공직신뢰구현	2,782	-	-	-	-	2,782	2,756	-	26	99.1	0.9
- 인사혁신확산	42,802	-	-	-	-	42,802	42,481	-	321	99.3	0.7
- 공무원후생복지	7,641	-	-	±33	-	7,641	7,458	-	183	97.6	2.4
- 국가인재개발원운영	17,437	-	-	±70	-	17,437	16,766	-	671	96.2	3.8
- 인사혁신행정지원	84,692	-	-	±51	-	84,692	80,779	-	3,913	95.4	4.6
• 회계기금간 거래	5,580,554	-	-	-	-	5,580,554	5,580,554	-	-	100.0	-
- 공무원연금기금지출	5,580,554	-	-	-	-	5,580,554	5,580,554	-	-	100.0	-
합 계	5,805,296	-	-	±154	-	5,805,296	5,799,582	-	5,714	99.9	0.1

(2) 전 용

- ☐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의한 전용액은 1억 5,400만원으로 전용 사유는 인건비 부족 1,40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2,400만원, 소송 비용 대응액 4,8000만원, 기타 7,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154	
1. 인건비 부족	14	청년인턴 인건비 재원 마련
2. 사업량 증가	24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23.3월) 후 여비 부족분 충당
3. 소송비용 대응	48	각종 소송비용 대응 등
4. 기타	70	인재원 대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등

(3) 이 용

- ☐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이용액은 없음

(4) 이 월

-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5) 불 용

- 불용액은 예산현액(5조 8,052억 9,600만원)의 0.1%인 57억 1,400만원으로
불용 사유는 인건비 잔액 39억 4,300만원, 집행잔액 17억 7,1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5,714	
1. 인건비 잔액	3,943	정원·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 잔액
2. 집행잔액	1,771	계약 낙찰차액,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등

(6) 성인지 결산

□ 2024년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을 고려한 공직자 역량개발 및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을 목표로 2개 사업에 예산 4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42억 8,300만원) 대비 97.0%인 41억 5,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억 2,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합 계	4,283	4,283	4,155	-	128
공무원후생복지지원 (공무원예술대전개최)	260	260	253	-	7
교육과정 운영	4,023	4,023	3,902	-	121

2. 공무원연금기금

가. 일반현황

-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
- ☐ 「공무원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기금 증식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음.

나. 자금 조달 및 운용

- ☐ 2024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30조 1,489억 1,7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조 2,300억 3,600만원(△3.9%) 감소하였음. 이는 자치단체 보수예산의 계획대비 감소로 인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수입 감소, 기존 보유 우량주식·채권 등 보유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감소 등에 기인함.

□ 기금 조달액의 세부내역은 기여금(공무원 본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지자체) 등 자체수입이 21조 6,238억 2,2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국가) 등 정부내부수입이 6조 5,677억 5,400만원, 여유자금 회수가 1조 9,573억 4,1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기금 운용액은 30조 1,489억 1,700만원임.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지출 26조 4,069억 3,800만원, 기금운영비 681억 3,500만원, 정부내부지출 394억 6,900만원, 여유자금운용액 3조 6,343억 7,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조달 및 운용]

(단위: 백만원, %)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기금의 조달	자체수입	21,984,071	21,623,822	98.4
	정부내부수입	6,607,106	6,567,754	99.4
	여유자금회수	2,787,776	1,957,341	70.2
	합 계	31,378,953	30,148,917	96.1
기금의 운용	사업비	26,510,856	26,406,938	99.6
	기금운영비	71,213	68,135	95.7
	정부내부지출	39,469	39,469	100.0
	차입금이자상환	123	-	-
	여유자금운용	4,757,292	3,634,375	76.4
	합 계	31,378,953	30,148,917	96.1

다. 재무상태

- 2024년도 말 기준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은 22조 706억 9,500만원으로 유동자산은 5,712억 1,500만원 증가하고, 비유동자산이 1,061억 7,900만원 증가하여 2023년도 말 대비 6,773억 9,400만원 증가함.
- 2024년도 말 기준 부채는 1,110조 6,531억 4,100만원으로 유동부채는 3,398억 1,100만원 증가하였고, 비유동부채가 72조 3,633억 5,300만원 증가하여 2023년도 말 대비 72조 7,031억 6,400만원 증가함.
- 2024년도 말 순자산총액은 △1,088조 5,824억 4,6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72조 257억 7,0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4년도(A)	2023년도(B)	증감(A-B)
자산	유 동 자 산	5,037,402	4,466,187	571,215
	비 유 동 자 산	17,033,293	16,927,114	106,179
	합 계	22,070,695	21,393,301	677,394
부채 및 순자산	< 부 채 >	1,110,653,141	1,037,949,977	72,703,164
	(1) 유동부채	1,577,850	1,238,039	339,811
	(2) 비유동부채	1,109,075,291	1,036,711,938	72,363,353
	< 순 자 산 >	△1,088,582,446	△1,016,556,676	△72,025,770
	(1) 기본순자산	4,013,533	4,013,533	-
	(2) 적립금 및 잉여금	△1,098,187,185	△1,025,968,073	△72,219,112
	(3) 순자산조정	5,591,206	5,397,864	193,342
	합 계	22,070,695	21,393,301	677,394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공무원연금기금은 2024회계연도 총 5회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변경사유는 무주택 공무원 주거지원을 위한 LH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예산 증액, 대여학자금 대부건수 증가로 인한 예산 확보, 인사이동 및 가재이전비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예산 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일반연구비 예산 확보, 퇴거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예산 증액 및 시설유지비 부족예산 증액, 공무상재해 승인건수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부족예산 증액임.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세부사업명	당 초(A)	변 경(B)	증 감(B-A)
1	주택사업관리	339,282	339,282	±2,295
2	대여학자금융자	366,563	436,727	70,164
	통화금융기관예치	1,867,715	1,797,551	△70,164
3	기금관리비	10,264	10,264	±129
4	주택사업관리	339,282	421,948	82,666
	통화금융기관예치	1,797,551	1,714,885	△82,666
5	재해보상급여	195,519	218,563	23,044
	퇴직급여	21,945,761	21,922,717	△23,044

주) 1차,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간 계획 변경임

3. 예비비

☐ 인사혁신처는 2024회계연도에 예비비 배정 및 집행액이 없음.

4. 재무결산

☐ 인사혁신처는 일반회계, 공무원연금기금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 2024년 말 인사혁신처 자산 총액은 21조 9,510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9,920억원(4.7%) 증가하였으며, 주로 유동자산 증가(7,158억원) 및 투자자산 증가(6,881억원)에 기인함.

☐ 부채 총액은 1,109조 7,956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72조 8,245억원 (7.0%) 증가하였으며, 주로 장기충당부채¹⁶⁾ 증가(72조 6,996억원)에 기인함.

☐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087조 8,446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71조 8,325억원(7.1%) 감소하였음.

1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액(C=A-B)	비율(C/B)
I. 자산(a)	21,950,985	20,959,020	991,965	4.7
· 유동자산	4,761,531	4,045,749	715,782	17.7
· 투자자산	9,826,884	9,138,769	688,115	7.5
· 일반유형자산	7,131,555	7,200,821	△69,266	△1.0
· 무형자산	38,716	41,449	△2,733	△6.6
· 기타비유동자산	192,299	532,232	△339,933	△63.9
II. 부채(b)	1,109,795,581	1,036,971,120	72,824,461	7.0
· 유동부채	1,507,874	1,102,207	405,667	36.8
· 장기차입부채	2,118,863	2,169,070	△50,207	△2.3
· 장기충당부채	1,105,009,548	1,032,309,907	72,699,641	7.0
· 기타비유동부채	1,159,296	1,389,936	△230,640	△16.6
III. 순자산(a-b)	△1,087,844,595	△1,016,012,100	△71,832,495	△7.1
·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	-
· 적립금 및 잉여금	△1,098,213,304	△1,026,187,477	△72,025,827	△7.0
· 순자산조정	5,679,802	5,486,470	193,332	3.5

※ 자료: 인사혁신처,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5.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별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표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서 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비용(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과 비배분비용(대손상각비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표시하며,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함.

$$\begin{aligned} \text{재정운영결과(국가 사업의 원가 분석)} &= \\ &\quad \text{프로그램 순원가(프로그램 총원가 - 프로그램 수익)} \\ &\quad + \text{관리비용} + \text{비배분비용} \\ &\quad - \text{비배분수익} \\ &\quad - \text{비교환수익} \end{aligned}$$

- 2024년 인사혁신처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38조 6,289억원 및 관리운영비 979억원, 비배분비용 144억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4,682억원을 차감한 38조 2,730억원임.
- 2024년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 38조 2,730억원에서 비교환수익 등 4조 9,437억원을 차감한 33조 3,293억원임.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 56조 2,229억원에서 프로그램수익 17조 5,940억원을 차감한 38조 6,289억원으로, 프로그램순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이며 동 프로그램총원가는 55조 8,451억원이고 프로그램수익은 17조 3,001억원임.
- 둘째,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04억원과 기타경비 275억원을 합산한 979억원임.
- 셋째,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67억원 및 기타비용 77억원 등을 합산한 144억원임.
- 넷째,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1,826억원, 자산처분이익 1,213억원, 배당금수익 1,593억원 및 기타수익 50억원 등을 합산한 4,682억원임.
- 마지막으로, 비교환수익 등은 전액 기금회계 금액으로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4조 9,437억원임.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I. 프로그램순원가	38,628,896
II. 관리운영비	97,869
III. 비배분비용	14,380
IV. 비배분수익	468,19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8,272,954
VI. 비교환수익 등	4,943,69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3,329,264

※ 자료: 인사혁신처,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5.

다.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한 해 동안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에서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재원의 조달은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인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과 예산배정액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하는 국고수입, 재원의 이전은 순자산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와 국고이전지출을 의미함) 및 조정 항목(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text{기말순자산} = \text{기초순자산} - \text{재정운영결과} + \text{재원의 조달 및 이전} + \text{조정 항목}$$

- 인사혁신처의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087조 8,446억원으로, 2024년 기초순자산은 △1,016조 121억원, 재정운영결과 33조 3,293억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조 247억원, 조정 항목 △41조 5,279억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5조 7,996억원 및 무상이전수입 37억원 등 5조 8,053억원이 재원의 조달로, 국고이전지출 428억원 및 기타 재원의 이전 2조 7,374억원 등 2조 7,807억원이 재원의 이전으로 계상된 것이며, 조정 항목 △41조 5,279억원은 주로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의 연금보험수리적 손익 변동에 따른 기타순자산 증감 △41조 7,212억원과 자산재평가이익 △202억원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2,135억원 등으로 인한 것임. 이에 따라 기말순자산은 △1,087조 8,446억원으로 계상됨.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I. 기초순자산	△ 1,016,012,100
II. 재정운영결과	33,329,26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024,654
IV. 조정항목	△ 41,527,885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 1,087,844,595

※ 자료: 인사혁신처, 「2023회계연도 인사혁신처 결산보고서」, 2024.

【경찰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1,279,380	2,799,001	1,466,614	114.6	52.4	4,722	1,327,665

※ 자료 : 경찰청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2,793억 8,000만원으로, 2조 7,990억 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114.6%, 징수결정액 대비 52.4%에 해당하는 1조 4,666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조 3,276억 6,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279,380	1,279,380	2,799,001	1,466,614	4,722	1,327,665
재산수입	3,237	3,237	4,129	3,221	-	908
경상이전수입	1,266,839	1,266,839	2,784,429	1,453,025	4,722	1,326,68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713	4,713	6,076	6,008	-	68
관유물매각대	4,591	4,591	4,367	4,360	-	7

※ 자료 : 경찰청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2018년부터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체납과태료 징수를 제고 노력으로 과태료 수납액이 증가하여 114.6%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2019년도~2024년도)]

(단위: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	99.8	102.3	115.6	128.1	122.4	114.6

※ 자료: 경찰청

□ 세입과목별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및 과태료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초과 수납하였으나, 재산수입 및 관유물매각대의 수납액은 미달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납액	세입예산액 과의 차이	내 역
합 계	1,279,380	1,466,614	187,234	
재산수입	3,237	3,221	△16	관유물(토지, 건물) 대여료
경상이전수입	1,266,839	1,453,025	186,186	벌금 및 과료, 과태료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713	6,008	1,295	기타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4,591	4,360	△231	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매각대

※ 자료: 경찰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1,279,380	1,466,614	1,327,665	187,234	
재 산 수 입	3,237	3,221	908	△16	
토지대여료	1,314	1,012	409	△302	• 토지임대료 수입 감소
건물대여료	1,502	1,653	492	151	• 건물임대료 수입 증가
기타관유물대여료	1	1	-	-	• 기타관유물 대여 수입 증가
기타재산수입	420	555	7	135	• 이자수입 증가
경상이전수입	1,266,839	1,453,025	1,326,682	186,186	
별 금 및 과 료	84,079	80,534	2	△3,545	• 통고처분 감소
과 태 료	1,134,090	1,318,886	1,083,736	184,796	• 과태료처분 증가
징 계 부가금	46	197	1,025	151	• 징계부가금 수입 증가
변 상 금	74	201	5,735	127	• 체납변상금 징수 증가
위 약 금	1,036	418	-	△618	• 위약금 감소
가 산 금	36,110	36,309	233,765	199	• 가산금 수입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1,404	16,480	2,418	5,076	• 과오지급 반환금 등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713	6,008	68	1,295	
면허료 및 수수료	581	458	-	△123	• 시험응시료 수입 감소
수업료	491	520	13	29	• 수업료 수입 증가
기타잡수입	3,641	5,030	57	1,389	• 잡수익 증가
관유물매각대	4,591	4,360	7	△231	
기계기구매각대	3,788	1,891	7	△1,897	• 기계기구 매각 감소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21	441	-	20	• 기자재 등 매각 감소
토지매각대	382	2,028	-	1,646	•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 증가

※ 자료: 경찰청

- 재산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99.5%에 해당하는 32억 2,1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토지대여료 등 감소에 따른 것임.
- 경상이전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14.7%에 해당하는 1조 4,530억 2,500만원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대수 증가 및 공익신고 활성화로 과태료 수납액 증가에 따른 것임.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에서는 세입예산액의 127.5%에 해당하는 60억 8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그 주요원인은 잡수익이 세입예산액 보다 13억 8,900만원 증가되는 등에 따른 것임.
- 관유물매각대에서는 세입예산액의 95.0%에 해당하는 43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는바, 기계기구매각대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조 9,493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6억 6,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조 9,750억 5,5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12조 8,943억 6,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733억 3,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 출 예산액 (추경포함)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 감	이 용 증 감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2,949,333	25,662	-	±14,870	±14,080	12,975,055	12,894,361	7,358	73,336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보호	17,506	0	-	±0	0	17,506	16,850	0	656
범죄수사활동	401,095	186	-	±518	-796	400,485	392,643	595	7,247
교통안전·소통확보	313,486	325	-	±2	-1,400	312,411	305,919	531	5,961
치안상황대응강화	47,441	2,044	-	±0	0	49,485	47,684	524	1,277
사회질서유지	140,034	1,159	-	±2,171	13,284	154,477	153,165	0	1,313
공공안전위험예 방 및 대응강화	34,621	0	-	±0	0	34,621	33,300	0	1,321
국가안보확보	47,712	146	-	±0	796	48,654	47,285	212	1,156
전문경찰양성	68,630	2,657	-	±698	0	71,287	68,488	2,091	707
치안인프라구축	494,099	17,984	-	±365	-2,000	510,083	483,632	2,153	24,299
과학치안활성화	56,691	0	-	±0	0	56,691	56,691	0	0
경찰행정지원	11,278,481	1,161	-	±11,116	-9,884	11,269,758	11,239,107	1,251	29,400
회계간거래	49,597	0	-	±0	0	49,597	49,597	0	0

※ 자료: 경찰청

- 이월액은 140억 8,000만원으로 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전용액은 148억 7,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액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5,800만원은 경찰대학 훈련센터 총사업비 증액 협의 지연 13억 8,400만원, 피복 원자재 수급 차질 13억 7,000만원, 사격 훈련 시스템 도입 해외부품 수급지연 5억 2,400만원 등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733억 3,600만원은 정·현원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75억 7,8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57억 5,800만원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4.9%, 6,080억 4,900만원이 증가한 12조 8,943억 6,100만원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19년도~'24년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출액	10,673,003	11,176,395	11,639,009	11,997,861	12,286,312	12,894,361
증감액	440,199	503,392	462,613	358,852	288,451	608,049
증감률	4.3	4.7	4.1	3.1	2.4	4.9

※ 자료: 경찰청

□ 세출예산 비목별로는 인건비가 인력증원 및 보수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 전출금 등은 경찰병원 전출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65.1% 증가함.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2024년도	12,894,361	10,106,826	1,942,717	314,304	480,917	49,597
2023년도	12,286,312	9,686,591	1,853,288	290,397	426,000	30,035
증감액	608,049	420,235	89,429	23,907	54,917	19,562
증감률	4.9	4.3	4.8	8.2	12.9	65.1

※ 자료 : 경찰청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4,026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억 4,800만원 (1.6%)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9조 9,61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6억 5,700만원(4.3%) 증가하였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격별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증 감	
				%
합 계	12,286,312	12,894,361	608,049	4.9
인 건 비	9,551,690	9,961,347	409,657	4.3
기 본 경 비	396,490	402,638	6,148	1.6
사 업 비	2,338,132	2,530,376	192,244	8.2

※ 자료: 경찰청

(2) 이 용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140억 8,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용	7,435	14,080	6,645	89.4

※ 자료: 경찰청

☐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배상금 및 국제부담금 충당을 위한 것이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14,080	
배상금	13,284	· 배상금 지급
국제부담금	796	· 국제부담금 충당

※ 자료: 경찰청

(3) 전 용

-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148억 7,000만원으로 2023년도 245억 2,200만원 대비 96억 5,2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전 용	24,522	14,870	△9,652	△39.4

※ 자료: 경찰청

-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액 99억원, 각종 배상금 부족액 21억원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14,870	
공공요금및제세	9,853	· 공공요금 부족
배상금	2,036	· 배상금 지급
연구비	960	· 각종 연구비 부족
업무추진비	710	·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부족분 충당
임차료	407	· 경호 버스 임차료 충당
기타	904	· 고용부담금, 교육기관 운영비 등 충당

※ 자료: 경찰청

(4) 이 월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73억 5,800만원으로, 2023년도 256억 6,200만원 대비 183억 4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이 월	25,662	7,358	△18,304	△71.3

※ 자료: 경찰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경찰대학 훈련센터 총사업비 증액 협의 13억 8,400만원, 경찰관 피복 원자재 수급 차질 13억 7,000만원,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해외부품 수급 지연 5억 2,400만원 등이 이월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7,358	
물건비	3,236.5	· 제품 개발 지연 및 생산 지연 등
건설비, 유형자산 등	4,121.6	· 제품 개발 지연 및 생산 지연 등

※ 자료: 경찰청

(5) 불 용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733억 3,600만원으로, 2023년도 1,072억 8,900만원 대비 339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액(B-A)	증감률
불 용	107,289	73,336	△33,953	△3.2

※ 자료: 경찰청

-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휴직 등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75억 7,800만원, 관서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557억 5,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73,336	
인건비	17,578	· 결원(휴직 등 정·현원 차이)로 인한 불용액
물건비	47,564	· 집행잔액
이전지출	2,524	· 집행잔액
자산취득 및 운용	5,670	· 집행잔액

※ 자료: 경찰청

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경찰병원)

-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¹⁷⁾으로 지정되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특별회계는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운용되고 있음.

가. 세 입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손 익 계 정	86,990	79,736	79,713	-	23
영업수입	31,700	24,188	24,169	-	2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6,460	6,230	6,226	-	3
전년도세계잉여금	3,184	3,672	3,672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5,646	45,646	45,646	-	-
자 본 계 정	4,356	4,512	4,512	-	-
전년도세계잉여금	403	559	559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53	3,953	3,953	-	-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869억 9,900만원으로, 797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7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자본계정의 세입예산액은 43억 5,600만원으로, 45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액 수납하였음.

1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나. 세 출

[2024회계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	전 용	이 용 이 체				
손 익 계 정	86,990	35	-	±311		87,025	74,858	-	12,166
인 건 비	50,141	-	-	-311		49,830	40,884	-	8,946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901	-	-	+93	-	2,994	2,915	-	79
진료업무지원	24,707	35	-	+157	-	24,899	22,121		2,778
장례식장운영	3,943	-	-	+61	-	4,004	3,641	-	363
공무원연금부담금	5,296	-	-	-		5,296	5,296	-	-
감가상각비	1	-	-	-	-	1	1	-	-
당기순이익	1	-	-	-	-	1	1	-	-
자 본 계 정	4,356	-	-	-	-	4,356	3,626	-	730
기본경비	183	-	-	-	-	183	182	-	1
자산취득	4,173	-	-	-	-	4,173	3,444	-	729

※ 자료: 경찰청

□ 손익계정의 세출예산액은 869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액 35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70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48억 5,800만원이며, 121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자본계정의 세출예산(현)액은 43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 2,600만원이며, 7억 3,000만원은 불용하였음.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 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¹⁸⁾.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이체				
계	4,860	-	-	-	4,860	4,860	-	-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제주계정	4,860	-	-	-	4,860	4,860	-	-

※ 자료: 경찰청

□ 2024년도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48억 6,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4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자산	17,813,160	18,086,074	272,914	1.5
· 유동자산	1,308,108	1,369,690	61,582	4.7
· 일반유형자산	16,367,822	16,585,157	217,335	1.3
· 무형자산	98,980	92,656	△6,324	△6.4
· 기타비유동자산	38,250	38,570	320	0.8%
II. 부채	395,123	402,014	6,891	1.7
· 유동부채	49,693	55,366	5,673	11.4
· 장기차입부채	62,556	71,535	8,979	14.4
· 장기충당부채	104,738	105,720	982	0.9
· 기타비유동부채	178,136	169,393	△8,743	△4.9
III. 순자산	17,418,038	17,684,060	266,022	1.5
·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	-
· 적립금및잉여금	3,627,942	3,933,000	305,058	8.4
· 순자산조정	6,891,446	6,852,410	△39,036	△0.6

※ 자료: 경찰청

□ 2024년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총액은 18조 860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9억 1,400만원(1.5%) 증가하였는데, 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이 2,173억 3,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 총액은 4,020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 9,100만원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규 금융리스부채 등으로 인한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가 각각 56억 73백만원, 89억 7,900만원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 관련 BTL미지급금 상환으로 인한 기타비 유동부채 87억 4,3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7조 6,84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0억 2,200만원(1.5%) 증가하였음.

나. 재정운영 분석

[2024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A)	2024년도 (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479,560	1,575,482	95,922	6.5
가. 프로그램총원가	1,515,392	1,605,787	90,395	6.0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5,832	30,305	△5,527	△15.4
II. 관리운영비	12,401,048	12,936,306	535,258	4.3
III. 비배분비용	939	16,361	15,422	1,642.4
IV. 비배분수익	55,165	50,314	△4,851	△8.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3,826,382	14,477,836	651,454	4.7
VI. 비교환수익 등	233	194	△39	△16.7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3,826,148	14,477,642	651,494	4.7

※ 자료: 경찰청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제외한 금액인바, 2024년도 재정운영결과는 14조 4,77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인 6,51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가 5,352억 5,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24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조 5,754억 8,200만원이었음.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14조 4,77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인 6,51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순자산변동 분석

[2024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A)	2024년도(B)	증 감 (B-A)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17,073,386	17,418,038	344,652	2.0
II. 재정운영결과	13,826,148	14,477,642	651,494	4.7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4,166,667	14,782,699	616,032	4.3
IV. 조정항목	4,133	△39,036	△43,169	△1,044.5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7,418,038	17,684,060	266,022	1.5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17조 6,840억 6,000만원으로 2023년말 대비 1.5%인 2,660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4조 4,776억 4,2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4조 7,826억 9,900만원, 조정항목은 △390억 3,6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소방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4,349	5,167	4,915	113.0	95.1	0	253

※ 자료: 소방청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3억 4,900만원이며 51억 6,7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113.0%에 해당하는 49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5,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349	4,349	5,167	4,915	0	253
재산수입	181	181	519	519	0	0
경상이전수입	2,420	2,420	3,166	2,914	0	25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36	236	157	157	0	0
수입대체경비수입	1,512	1,512	1,325	1,325	0	0

※ 자료: 소방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차이	증 감 사 유
합 계	4,349	4,915	253	566	
재 산 수 입	181	519	0	338	
관유물대여료	17	3	0	△14	중앙소방학교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 지원기간 연장으로 반환금 발생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64	516	0	352	국고보조금, 출연금 이자 증가
경상이전수입	2,420	2,914	253	494	
벌금 및 과태료	1	0	0	△1	사유 미발생
변상금 및 위약금	126	319	0	193	지체상금 발생
기타경상이전수입	2,293	2595	253	302	국고보조금, 출연금 집행잔액 증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36	157	0	△79	
면허료 및 수수료	200	105	0	△9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
잡수입	36	52	0	16	
수입대체경비수입	1,512	1,325	0	△187	
기타잡수입	1,512	1,325	0	△187	신임소방사 교육인원 감소

※ 자료 : 소방청

□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는 25,3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
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에 따른 것임.

나. 세 출

(1) 총 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03억 8,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86억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690억 3,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5%인 3,302억 7,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1억 2,900만원이며, 불용액은 66억 3,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 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 감	이 용	세출예산 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40,389	28,645	-	±4,929	-	369,034	330,272	32,129	6,633
소방정책지원	237,396	28,362	-	±2,115	-	265,570	237,894	22,133	5,543
소방행정지원	102,993	283	-	±2,814	-	103,464	92,378	9,996	1,090

※ 자료 : 소방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이 ·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이 용	전 용
계	340,389	369,034	±188	±4,929
인 건 비	71,317	72,124	188	632 -13
기 본 경 비	10,293	10,542		307 -327
사 업 비	258,779	286,368	-188	3,990 -4,589

※ 자료 : 소방청

(2) 전 용

-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49억 2,900만원임.
- ☐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공사비 부족재원 16억 1,800만원, 소방청 인건비 부족 재원 6억 3,200만원,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 부족 재원 18억 5,700만원 등을 전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 용 내 역
합 계	±4,929	
인건비	632 -13	소방청 인건비 부족 재원 마련(632) 등
기본경비	307 -327	세계소방회의 참석 및 기본경비 부족분 마련(307) 등
사업비	3,991 -4,590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 부족 재원(1,857) 등

※ 자료 : 소방청

(3) 이 월

-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전년대비 34억 8,400만원 증가한 321억 2,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액(A-B)	증감률
이 월	32,129	28,645	3,484	12.2

※ 자료 : 소방청

□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321억 2,900만원은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126억 6,800만원, 119종합상황관리 통합상황실 구축 사업 95억 3,800만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 운영 사업 82억 9,000만원, 기본경비 4억 5,600만원 등이 각각 이월 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 월 내 역
합 계	32,129	
절대공기 부족	22,207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12,668), 119종합상황관리 통합상황실 구축(9,538) 등
계속비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이월	9,466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 건조(5,600)·감리(415) 및 임무장비 구매(1,021) 등
기본경비	456	소방청 및 소속기관 경상적 경비 이월

※ 자료 : 소방청

(4) 불 용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대비 36억 2,700만원 감소한 66억 3,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액(A-B)	증감률
불 용	6,633	10,260	△3,627	35.3

※ 자료 : 소방청

-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 66억 3,300만원은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6억 3,100만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 33억 5,000만원, 기본경비 4억 600만원, 인건비 2억 4,600백만원 등 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불 용 내 역
합 계	6,633	
인건비 집행잔액	246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비 집행잔액	5,981	개별 사업비의 낙찰차액, 집행잔액
기본경비 집행잔액	406	기본경비 집행잔액

※ 자료 : 소방청

2.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4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자산	752,081	644,706	107,375	16.7
· 유동자산	3,647	2,895	752	26.0
· 투자자산	559	602	△43	△7.1
· 일반유형자산	717,369	607,447	109,922	18.1
· 무형자산	29,000	31,958	△2,958	△9.3
· 기타비유동자산	1,506	1,804	△298	△16.5
II. 부채	2,009	23	1,986	8634.8
· 유동부채	2,009	23	1,986	8634.8
· 장기차입부채	0	0	0	0.0
· 장기충당부채	0	0	0	0.0
·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III. 순자산	750,072	644,683	105,389	16.3
· 기본순자산	102,344	102,344	0	0.0
· 적립금및잉여금	567,157	461,480	105,677	22.9
· 순자산조정	80,572	80,859	△287	△0.4

※ 자료 : 소방청

- 2024회계연도말 기준 소방청 자산은 전년 대비 1,073억원 7,500만원이 증가한 7,520억 8,100만원으로 일반유형자산이 1,099억 2,200만원, 유동자산이 752억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년 대비 19억 8,600만원 증가한 20억원 900만원으로 유동부채의 20억원 900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53억 89백만원 증가한 7,500억 7,2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분석

[2024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A)	2023년도 (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가 - 나)	153,368	127,392	25,976	20.4
가. 프로그램총원가	154,693	128,873	25,820	20.0
나.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325	1,481	△156	△10.5
II. 관리운영비	101,183	96,255	4,928	5.1
III. 비배분비용	256	278	△22	△7.9
IV. 비배분수익	3,684	2,416	1,268	52.5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51,123	221,509	29,614	13.4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251,123	221,468	29,655	13.4

- ☐ 2024회계연도 소방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533억 6,800만원이며, 재정운영결과는 2,511억 2,300만원임.
- ☐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546억 9,300만원, 관리운영비 1,011억 8,300만원, 비배분비용 2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익 13억 2,500만원, 비배분수익 36억 8,400만원으로 구성됨.
- ☐ 2024년도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296억 1,400만원 증가한 2,511억 2,300만원임.
- ☐ 이는 주로 소방정책지원으로 발생하였고, 프로그램순원가는 1,533억 6,800만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26억 5,600만원, 경비 285억 2,700

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일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2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그램순원가는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1,533억 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 순자산변동 분석

[2024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A)	2023년도 (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644,683	535,329	109,354	20.4
II. 재정운영결과	251,123	221,509	29,614	13.4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356,800	331,286	25,514	7.7
IV. 조정항목	(288)	(424)	136	32.1
V. 기말순자산 (I-II+III+IV)	750,072	644,683	105,389	16.3

□ 소방청의 2024년도 기초순자산은 6,446억 8,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500억 720만원으로 기초순자산 대비 1,053억 8,900만원(16.3%) 증가하였음.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행정안전부 소관】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 최근 5년(2020~2024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5회(매년)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33개 사업, 4회는 30개 사업임.
- 최근 5년(2020~2024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5회(매년) 이·전용등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42개 사업, 4회는 33개 사업임.
- 2월 이전에 이·전용등을 실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기획조정실’ 등 총 13개 세부사업이 있었음.
- 특정 세부사업·세목으로부터 이·전용등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하여 주거나,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한 후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다시 이·전용등 받는 사례(이하 “이·전용등 번복”)도 발생하였음.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세부사업의 경우 총 3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고,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세부사업의 경우 두 개의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리 세부사업의 경우 두 개의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두 개의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분권실 세부사업의 경우 임차료(210-07)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음.

【세 출】

【기획조정실】

1.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7033-301)

- 행정안전부는 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작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7031-500)

-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사업’의 일부 용역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계약)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산확정 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의정관실】

3. 국경일 등 정부행사(2131-300)

- 국민방한 환영식 등 정부의전행사 사업은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매년 50% 미만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거 집행실적 점검과 집행관리 강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정부혁신실】

4.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2036-507)

-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사업과제 선정 및 설계 등 구축에 앞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본사업단계인 전환 예산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행정안전부는 사업단계별 실제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정하고 추진단계별로 관리하는 등 국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과도하게 불일치하거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집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출연금을 과도하게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고 보유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출연금(350-02목)이 기관운영 소요경비로 집행되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향후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 ODA)(2038-501)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파견관의 주택임차료를 파견국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반영하여 파견국별 지급한도기준을 설정하고 실비정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파견관 선발 시 자격요건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출연금은 다른 비목에 비하여 집행상 재량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예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과제 선정에 있어 민간과 연계를 통해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수요기관의 과제 단계별 후속조치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1933-307)

- 내역사업인 ‘범정부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은 세목조정을 통해 당초 국회가 심사하지 않은 예산 미반영 사업이 추진된바, 향후 행정안전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라도 집행가능성에 비해 과도한 예산조정이 이루어져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047-500),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2031-504)

- 정부24 알림서비스를 다른 세부사업의 국민비서 예산을 사용하여 당초 예산액의 44.4%(1억 7,300만원)를 불용처리한 것은 국민비서 시스템에 정부 24를 연계하면서 알림 발송 관련 예산을 중복·편성한 데 기인하고 국회가 심사·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시 중복되는 예산 항목을 조정·편성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및 국민비서 등 대국민 알림서비스와 개별기관의 알림서비스를 상호 연계 시 행정안전부와 개별기관 간 중복 알림을 방지하고 알림 발송 채널의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2031-504)

- 내역사업인 “공공분야 인공지능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은 당초 ISP 수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출연하였다가 사업기간 중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ISP 결과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을 구체화, 유관기관 간 사전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과다한 이월이 발생한바, 향후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정보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화예산안 편성 시 유관 기관 간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2046-502)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다음연도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4분기에 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출연금 교부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전자정부법」상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고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한 문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측면 등이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전국통합데이터 위탁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필요하다면 「전자정부법」상 전문기관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데이터 및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047-500)

- 내역사업인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구축’은 다수 정부부처 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예산도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행정안전부가 사업수행단계에 이르러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예산안 편성 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행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ISP 완료 이후 요구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방행정국】

11. 지자체경쟁력지원(1139-307)

-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산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 및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법정 개최 기준에 따라 적극 운영하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필요가 있음.

【자치분권국】

12.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1131-315)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결과와 관련하여 ‘존치대상’ 사무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 결과와 연계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활동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3. 지방시대위원회 운영(1132-302)

-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간 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충분한 용역기간을 확보하여 용역계약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준시점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

14.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1132-300)

- 국가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지원업무가 공동으로 수행되어 해당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동시선거 시 국비와 지방비 분담기준을 마련해 국가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15.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이 기한 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집행 지연이나 이월 누적에 따른 사업 효과 저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적 효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지원국】

16.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1237-50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4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2차)’ 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지방비로 집행해야 하는 ‘상용 SW 도입’에 국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수탁기관의 집행·정산시 국비-지방비 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부적절한 정산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17. 접경권발전지원(1232-300)

-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집행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8.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

-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추진시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본래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19.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1131-316)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홍보영상 제작 대행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으며, 일반지출행위를 거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국고금 관리법」 및 관계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을 별도의 내역사업 없이 전액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다른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홍보 영상물 제작 방식에 따라 예산비목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경제실】

20.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 신규로 구축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2단계) 개통초기에 여러 가지 결함과 잦은 오류로 인해 국민과 일선 담당 공무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서울시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추진시 사전 테스트 및 시범 운영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1336-301)

- 행정안전부는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장기간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지방공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
- 행정안전부는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점검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여 신속한 경영개선명령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배달료 지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일정을 반영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2024회계연도에 실행이 부진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비 매칭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정부청사관리본부】

23.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231-301)

- 내역사업인 ‘편의시설 정비’는 타 내역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집행지침」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4.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2231-302)

- 행정안전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예산변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5.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2213-303)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 및 추가 행정절차에 대해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향후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과 같이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예산이 재이월되고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연내 예산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6. 인건비(2501-10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법의관 결원으로 인해 인건비 미집행 예산을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외부 촉탁의 부검이 증가하여 부검료 지급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등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의관 인력의 실효적인 충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7.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2531-30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감정장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예산을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연례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지침」 및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적절한 비목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

【안전예방정책실】

28. 재난안전산업활성화(2631-303)

-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사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이월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일정을 재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요조사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결과를 게시하는 것 외에 별도의 환류체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요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수요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생산·공급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29. 지역안전개선 컨설팅(2632-303)

- ‘안전취약지역 시설 개선모델 실증사업’은 20억원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58.1%에 불과한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시점의 설정 및 보조사업의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집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난실】

30.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2731-304)

-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최초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민간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사업구조 재설계를 통해 민간경상보조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향후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1.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2731-307)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 수요 미확보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일몰연도인 2024년 실집행률은 0%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동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2635-301)

-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은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의무를 더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재난복구지원국】

33. 풍수해보험(2734-302)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4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중 ‘소상공인 가입률’의 성과목표를 25%로 설정한 것에 대비하여 실적은 6.5%에 불과하였는데, 소상공인 가입률 제고와 국가재정부담의 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업의 집행 환경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장·단기 관점에서 사업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상대비정책국】

34.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내역사업 중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매년 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 지연 요소들을 파악하고, 집행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난안전교육원】

35. 재난안전교육원운영(2633-300)

-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사업은 매년 유사한 사유로 집행 단계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한 비목별 예산 변동이 2021년 2,500만원, 2022년 2,200만원, 2023년 1억 7,200만원, 2024년 1억 6,000만원으로 반복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전 사업연도의 실제 소요 및 집행실적을 비목별로 검토하여 비목별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세목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거사업무관련지원단】

36.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이후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로 인해 예산 이월 및 사업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연 없이 잔여 과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7. 제주4·3 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 제주4·3사건 피해보상금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및 타 사업으로의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적정예산 편성 및 보상금 지급 업무 처리 활성화를 통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2434-300)

-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어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재차 타 사업으로 공사비 예산을 전용하였는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불필요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9.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 위원회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위원회의 접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괄】

1.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인력관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휴·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인 이·전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청사관리 사업의 경우 편성된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대비 과도한 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지출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세입결산】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채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물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납물 제고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의 반환명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행하고 있어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반환액에 대한 관리권한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물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세출결산】

1.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설치 후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 시점까지의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한 합의가 법적 기한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기준 시점을 현행보다 앞당기거나 획정위 설치 및 선거구 획정기한을 순연시키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정려금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외에 파견·위촉직원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재외선거관리(1131-30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관리 인력 지원 대상 공관 선별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재외선거관리 방문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관리사업의 효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등록 및 투표율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재외선거인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위탁선거관리(1131-3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에서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예산의 분산 편성·통합 집행과 동일 업체와의 장기·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등 재정운용 관련 법령과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5.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 공정선거지원단은 한시적 인력구조에 따른 전문성·지속성 부족과 성과관리 및 교육체계 미비로 인하여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교육체계 정비, 유경험 인력 활용 기반 마련 등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과목별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1. 총괄 검토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로 인해 총 2,116건의 조사중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3기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기 위원회의 출범 관련 개정법률안들의 처리를 위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출범 이후 조사중지 사건의 신속한 재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진화위운영(1031-300)

- ‘세종 추모의 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 채취’ 용역사업의 2024년 이월금액이 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미집행되었는바, 향후 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월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외여비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어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정 금액보다 큰 금액이 불용되었는바, 향후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및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필요한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진화위인건비(7001-150)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였는바, 확정예산이 아닌 예산요구액보다 더 큰 금액이 집행된 것은 경력직 직원의 호봉 산정 등을 감안한 인건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인건비 예산요구 시 적정 인건비를 편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진화위기본경비(7002-250)

- 국가배상판결 전수조사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전액 미집행 후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나타났으므로, 추후 예산 요구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 연구용역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1131-100)

-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의 잔여기간 예산 집행 시 예산의 전용 등 예산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예비비 집행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2026년에는 사업별·비목별로 합리적인 본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별조사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임대차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1. 국가시험시행(1631-300)

- 2024년도에 세목조정을 통해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에 과도한 초과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인사혁신처는 향후 당해연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302)

- 각 부처별로 실시되는 일반임기제 채용이 종전보다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혁신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부처별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934-531)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신규 임용의 지연 및 기존 직위의 장기 공석 발생 문제가 국제기구와의 협의 지연 및 실제 소요에 못 미치는 예산 편성 등의 원인으로 반복되는바,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파견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 현안 대응력 약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공무원후생복지지원(2044-303)

- 매년 입찰을 통하여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행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주체로서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2131-650)

-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에서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초과수입을 국고로 반납하기 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하여 교육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운영(2044-306)

- 공무원마음건강센터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통한 공무상 재해 예방의 물적 기반으로써 기능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무원연금기금】

<수 입>

7. 토지매각대(15-72-721)

- 수안보상록호텔은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매각 이외에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영업실적 제고 등 시설 보유를 전제로 한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지 출>

8. 일반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8920-891)·특별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8920-892) 및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3141-323)

- 대여학자금수탁금 잉여액은 가급적 가용 재원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학자금 대부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상환 기간 연장 등 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당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9. 주택사업관리(3151-333)

- “청년공무원 주거지원율”은 청년세대 공무원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고려를 시의성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동 세부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전체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하거나 복합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고객지원사업(3262-302)

- 공무원연금공단은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모색하고 기관 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문자 알림을 위해 신규로 편성된 재원 중 일부만을 동 사업에 집행하고 대부분의 재원을 다른 사업의 확대 추진에 활용하였는바, 공무원연금공단은 면밀한 수요 예측과 사업 계획에 기반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결산】

1.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

- 경찰병원은 2024년 병상가동률이 25.5% 수준이고, 2024년 입원환자수는 19,592명으로 2016년 76,615명의 25%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결산상 수입이 수입계획 대비 76.2%에 그쳤는 바,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병상가동률을 제고하는 등 진료수입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경무인사기획관실】

1. 경무 인사 지원(7131-313)

- 청년인턴 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채용 중심으로 채용환경이 변화하면서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가 91점에 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청년인턴 중 21명은 취업준비, 자기개발 등의 이유로 중도 사직하여 인건비 등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청년의 취업 환경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퇴직경찰관 취업지원(7135-312)

- 경찰청은 2024년 퇴직예정경찰관 교육 신청자 중 58%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계급정년제 운영으로 60세 전 퇴직자도 많은 경찰청은 퇴직경찰관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교육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향후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컨설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전직지원센터 외에도 기존 치안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제협력관】

3.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 신규 도피사범의 급증(85.7%↑)으로 송환율은 '23년 91.7%에서 '24년 72.6%로 하락하였고, 송환 실적의 약 80%가 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에 집중되며, 14개국은 송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경찰청은 전담 기능 강화, 송환 예산 확대, 미송환국 대상 협력채널 구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래치안정책국】

4. 경찰 기동력 강화(4231-311)

- 2024년 연초부터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기 위해 일반승합(특장) 차량 330대에 대한 계약을 2023년 11월 21일에 체결하고, 2024년 2월과 3월에 동 차량들을 인도받았는데, 계약을 체결한 2023년 11월 21일은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2023년 12월 21일 이전으로, 동 계약 절차는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집행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 같은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경찰 기동력 강화 사업의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사업의 예산 계획 변동이 많았고, 반복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예산 계획에 따른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장비관리유지(4231-314)

-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국산화 사업의 실패 원인과 후속 조치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성능기준의 명확한 설정과 계약체결 이전의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고, 검수·평가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장비 국산화 기술의 축적·활용과 외산 도입에 따른 예산부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조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4431-613)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사업은 연구기관 단계 최종 예산 집행률이 77.5%로 낮은 수준에 그친 만큼, 경찰청은 향후 R&D 사업 추진 시 연구기관 단계의 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관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대응국】

7.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실제 집행 실적을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비목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중 대규모 전용이나 예산 배정 후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1431-311)

- 경찰청은 2023년과 2024년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점검 결과, 2023년에는 38.1%가 ‘미흡’ 평가를 받고, 2024년 점검에서도 점검대상 순찰팀원의 66%가 ‘미흡’ 평가를 받는 등 일부 인력의 전산 기반 사건처리 역량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5년 6월 ‘형사사법업무의 전면 전자화’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역량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물리력 대응훈련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부정적 평가(53.8%) 결과와 최근 발생한 각종 위기상황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전형 훈련 확대, 제압 기술 및 장비 활용 교육 강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선하고 경찰관의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이후 농촌 등 지역에 위치한 치안센터가 감축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치안센터 670개소 중 상주 근무자가 배치된 곳이 329개소, 활용되지 않는 곳이 233개소인데, 치안센터의 축소는 인구감소 지역의 치안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안센터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생활안전교통국】

9. 사회적약자보호활동(1132-311)

- 경찰청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경찰청은 인력 확충 및 합리적 배치, 법적·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학교폭력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 수가 급증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방적 개입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 공단은 면허관리 사업 중 적성검사 발급 및 판정수요를 적절히 예측하여 과소 추계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입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안내문자 발송 확대, 조기갱신 할인 등 수요 증가 요인을 사전에 반영하고, 과거 실적을 토대로 현실적인 수검률을 적용하는 등 수입예산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공단은 제1종 대형 면허시험용 차량 구매 시 사업추진과 법령개정 일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요 자산의 중장기 교체 계획 수립 시 관련 제도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경비국】

11. 기동대 운영 및 관리(2131-314)

- 법원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소유의 토지를 경찰청이 SH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년 연간 34억 4,069만원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경찰청은 2024년 12월 31일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2025년 예산에서는 임차료 항목으로 34억 4,069만원을 편성했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단 청사 건물이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토지 점유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점유할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수사국】

12.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2)

- 사기범죄 발생과 피해액은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수사인력 부족, 높은 이탈률, 지역별 수사역량 격차,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수사인력의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 지역별 수사역량 균형 확보, 체계적 인력 운영 등 사기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연간 24만건의 신고를 처리하는 상담팀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접수된 신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 요청 등을 실시하지만 실제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졌는지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해당 처리결과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사업을 통해 구축된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구축을 계획하는 플랫폼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사인권담당관실】

13.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1231-317)

-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 시설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실시율이 2021년 7.0%에서 2024년 4.6%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절차 간소화, 수사관 교육 강화,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영상녹화제도 활용률을 제고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앙경찰학교】

14. 신입순경 교육(4133-311)

- 경찰청은 신입순경교육 사업 추진 시 태블릿 PC 등 자산성 물품과 통신서비스를 예산과목별 집행 원칙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고 일반용역비로 일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지출성격에 적합한 비목으로 각각 계상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 목적에 맞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산관리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향후 중앙경찰학교 등 소속 기관의 유류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단가와 과거 예산 비목별 집행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연말의 반복적 세목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대학】

15. 경찰대학운영(4131-311)

- 경찰청은 경정교육과정 이관 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하게 전용한 후 상당 부분을 타 용도로 세목조정하였는데, 향후 교육과정 변경 시 정확한 소요 예측에 기반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등 건설 사업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과 공정 관리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함.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증축 사업은 2025년 8월까지 이월금 전액 집행과 2026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결산】

1. 경찰병원인건비(4302-111)

- 경찰병원은 2024년 인건비 예산 집행률이 82% 수준이고, 18%가 불용되었는데, 집행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원 대비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직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 소관】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문제, 수면문제 등이 있어 마음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4년도 참가자 중 화재현장 진압업무 종사자 등 현장인력이 전체 참가자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나 행정인력도 전체 참가자의 30.1%를 차지하는 등 동 프로그램이 참가자 선정 기준과 부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동 프로그램의 1인당 교육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202,247원~990,000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방청은 현장인력이 동 프로그램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대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 병원을 충청북도 음성에 건립하는 사업인데, 소방청은 2024년도에 전용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재원으로 의료가스장비 배관설치 공사,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 공사 등을 시행하였음.
당초 국립소방병원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의료가스장비 배관 공사 등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과 의료가스장비 배관 등은 의료기관 허가를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 설치를 중간설계 단계에서 제외한 후 예산전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확정·조정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보이므로 소방청은 향후 대규모 공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1132-312)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은 전국의 소방헬기를 한 곳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 기준으로 2024년 9월 경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공사 착공이 2025년 10월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건립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 계획(2024년 1월~4월)보다 지연되어 약 13개월(2024년 7월~2025년 7월)이 소요되었음. 이는 연약지반 보강 공사 재원 확보 문제와 더불어 범정의무 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요건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등 공사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 소방청은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119항공정비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실화재훈련시설 구축(1132-324)

- 소방청은 2024년도에는 서울, 충청, 경남,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을 시작하였으나 실집행률은 36.8%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됨.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변경, 계약 지연 등 실집행이 늦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소방청의 보조금 교부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임.
- 향후 소방청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연도의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소방산업육성지원(1133-301)

- 소방청은 ‘소방산업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에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내역사업을 신설하였는데, 동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소방산업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전체 소방장비 제조·공급업체의 1.6%인 21개 업체 참여), 중도 포기 업체도 발생하면서 컨설팅 지원 실적이 목표(30개사) 대비 50%(15개사)에 그침에 따라 예산현액의 48%에 해당하는 4,8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음.

이는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에 대한 국내 소방산업체의 저조한 관심과 복잡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에 대한 소방청의 불충분한 사전 안내,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향후 소방청은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에 대한 국내 소방산업체의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6.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 소방청은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위탁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동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등록 건수 및 이용 기업 수는 증가하였음. 그러나, 유상 거래를 위한 데이터 등록 비율(35.5%)이 무상 데이터 등록 비율(64.5%)에 비해 낮았고 유상 거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약 50.4% 감소하였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증가 규모(연평균 증가율 2.0%)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소방청은 위탁사업 관리 강화, 데이터 품질 제고 및 유통 활성화, 수익 기반 마련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실질적 활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소방안전교육(1134-301)

- 소방청은 ‘소방안전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4년에 진행된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월 평균 접속자 수나 월 평균 접속 횟수가 고도화 사업 진행 이전에 비해 각각 60.1%, 60.2% 감소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연령이나 성별을 알 수 없는 “비회원” 유형의 이용자 비중이 93% 이상이어서 이용자 통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동세부사업은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교육인원 증가율은 예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 7.1%, 교육인원 증가율 15.4%).

향후 소방청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소방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운영 방향 또는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8.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1171-305)

- 소방청은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축기지 장비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하였는데, 2024년도 구매 장비 중 편성단가에 비해 구매단가의 차이가 크거나 편성 수량 대비 구매 수량의 차이가 큰 품목은 각각 전체 중 수의 30.0% 및 10.1%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재난에 대한 사후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장비 보완의 필요성을 반영하거나 사업 계획 시기와 집행 시기 간의 구매환경 변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필요한 장비의 품목, 단가, 수량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보임.

소방청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인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소방장비의 적정 구매단가와 구매 수량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V. 대체토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 안전 등급이 낮은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된 지자체의 분야별 안전 등급과 컨설팅 대상 사업분야간 연계성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사업지구별로 패키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 손해율이 50% 미만임에도 자부담율을 높여 보험가입률이 하락하고 올해와 같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감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민간건축물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 지난 3년간 한 건을 제외하고 집행된 바가 없는데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인건비 이전용과 관련하여,
 - 선거 전후로 인력변동이 반복되고 있고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인력 운용 및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함.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없 음

4.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없 음

5. 인사혁신처 소관

없 음

6. 경찰청 소관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 전국 반납률을 높이고 지자체별 반납률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국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 기동순찰대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소방청 소관

없 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23건, 부대의견 6건을 첨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6건, 부대의견 2건을 첨부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

4.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

5. 인사혁신처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6건, 부대의견 2건을 첨부

6. 경찰청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12건, 부대의견 1건을 첨부

7. 소방청 소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6건을 첨부

VII. 찬반토론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없 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없 음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없 음

4.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없 음

5. 인사혁신처 소관

없 음

6. 경찰청 소관

없 음

7. 소방청 소관

없 음

VIII. 심사결과

1. 행정안전부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원안 의결

4.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안 의결

5. 인사혁신처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6. 경찰청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7. 소방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별첨>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결과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요약 ＞

소 관	세입 · 세출결산
행정안전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원안의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의결
인사혁신처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경찰청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소방청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의결

1.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54건(결산·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복)	합 계
행정안전부	-	-	3	4	16	-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6	-	6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	-	-	-	0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	-	-	-	-	0
인사혁신처	-	-	-	2	5	1	6
경찰청	-	-	-	1	11	-	12
소방청	-	-	1	1	4	-	6
합계	-	-	4	8	42	1	53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행정안전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집행부진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2031-504)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상반기 다부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민원상담데이터를 확보하여 초거대 AI민원상담서비스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용역은 2025년 1월에 발주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3만건 및 세종특별자치시 15만건의 기초데이터만 확보(2025.2월)하여 학습 효과도 제한적임. ○ 현재 민간 챗봇의 학습수준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민원상담 LLM사전학습 및 Instruction Tuning Data’를 고려하면 사업의 실효성도 저하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집행 부진 및 불필요한 추가지출소요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 효과도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국가지원 정보화사업관리 운영지원 사업 대상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2041-502)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평가 기준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한 인건비 인상 단행 및 이사회 미보고, 인건비 산출근거 임의 변경, 2024년 성과연봉 지급률을 편성예산(직급별 표준단가의 151.76%)보다 높게(155.27%) 지급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수탁사업의 불용·이월액 미반납, 휴직자에게 인건비 지급,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총인건비 한도 미준수 등이 지적됐음에도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속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300)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부 지역사업의 예산이 수시배정을 거쳐 연말에야 교부되어 대부분 미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조속히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지자체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 부담 경감 및 지원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접수를 위하여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수익의 일부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부담하도록 함(지방비 100%)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가 기부모금액 대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5	지역투자계획 수립지원 컨설팅의 실효성 분석 및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금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컨설팅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역투자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 고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으나,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분산적·단발적으로 추진되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기금의 신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7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실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 차년도에 기금 배분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제 적용사례는 없는 등 성과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 ○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광역지원계정은 평가 없이 배분되는 등 차등 지원의 취지가 약화되고 중복투자 사례가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산 후 기금운용주체에게 반납되지 않고 재투자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실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초지원계정 감액규정의 합리적인 적용기준 마련과 광역지원계정 운용방식의 구체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부 절차를 개선하며, 성과관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조치할 것 ○ 행정안전부는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자펀드 결성 촉진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출자대상으로 선정된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4개 프로젝트에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어 출자금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자펀드 결성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결성시한 준수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운용사가 선정 취소되는 경우에도 자펀드 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 수단을 마련할 것		
9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3131-3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32억 5,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52%에 불과하고, 2019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교부금을 전액 교부하고 실집행률은 저조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의 전액 교부를 지속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재발방지책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마을기업의 고용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마을기업육성(3131-3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마을기업 지정 취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마을기업 1개당 상용근로자 수도 정채되고 있어, 재정사업 성과지표상 성과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의 고용 측면에서의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1	미이월 보조금의 적기 반납을 위한 보조금 관리방식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3131-303)	시정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3년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일부(15억 3,900만원)가 절차상 하자로 이월되지 못하였음에도 반납처리 되지 않아 정산이 2025년 4월까지 지연되었고, 당초 이월액에 의해 충당하고자 하였던 2023년 지출소요가 2024년 예산으로 집행되어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이월이 승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유보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방식을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세입경정 없는 지방교부세 미교부(불용) 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교부세(1600)	시정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세입경정 없이 약 2.2조원 (보통교부세 2.1조원, 특별교부세 1,856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223억원)을 미교부(불용) 하였음. - 이는 세수결손시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을 경정하면서 교부세도 함께 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제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인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에도 어긋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024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세입경정 절차 없이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의적인 지방교부세 미교부(불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특별교부세에 대한 수시배정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특별교부세<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시정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2024년 특별교부세(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재난안전관리) 등 예산현액 1조 8,500억 원 중 8,478억원(약 45%)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되었고, 수시배정 예산의 87%에 해당하는 7,370억원이 11월말~12월말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됨. - 특별교부세는 법률에 의해 수입이 보장된 간접 조세 수입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의 수시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특별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수요를 제출하고 지방교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이를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하여 연말에 교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의 수시배정 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지 않도록 할 것		
14	사업추진 전 실수요, 중기부 등 타 기관 사업 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실집행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중 ‘배달료 지원’ 사업은 사전에 실수요를 면밀히 산정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배달료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현액 30억원 중 9억 6,0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저조(32%)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도 ‘배달료 지원’ 사업과 유사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 수요 예측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 업소 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들의 유사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여건 등 지원의 전체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631-303)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사업은 일부 재난안전제품의 경우 정량적 인 인증기준이 없어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의 정량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등급화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재난안전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16	안전개선시설 모델 실증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2632-303)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안전취약지역시설개선모델 실증사업’ 은 2023년 지역안전지수 산정 결과 와 2024년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사업 유형을 비교해보면 안전지수 산정 결과와 무관 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지역시설개선모델 실증사업 관련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 업비 보조비율을 개선할 것 ○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보강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3031-501)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 사업은 총 34종의 재난·안전분야 개별 시스템을 3개 포털(20종 시스템)로 통합·연계한다는 계획이나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행이월이 과다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보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것		
18	학습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 (3032-509)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육안관제를 인공지능에 의한 지능형관제로 완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초에는 직접 지능형관제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습데이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각 지자체의 지능형 관제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현 사업 여건상 비용 등의 문제로 지자체 등의 데이터 활용 여부 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능형 관제체제 구축 지원 목적으로 제작·관리되는 학습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실증공모 결과를 ISP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 (3032-509)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정보화사업과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실증공모와 ISP를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일정상 실증공모(시범적용) 사업보다 ISP가 먼저 종료되어, 이와 같은 추진방식으로는 ISP 수립 시 실증공모의 결과물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의 ISP 수립 시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실증공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ISP 수립 이전에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완료할 것		
20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검증된 대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2731-307)	주의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에도 사업의 실수요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년도(2023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실집행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향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635-300)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지연으로 신규 개소나 위험도가 증가한 개소에 대한 파악이 제약되어 차년도 재해예방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다음연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계획의 기초자료 수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지도록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것		
22	집행 환경을 고려한 정책수단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풍수해보험 (2734-302)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3년 및 2024년에 걸쳐 제3자 기부가입자 및 일반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하향 조정(제3자 기부가입자 : 70% → 50%, 일반가입자 : 70% → 55%)으로 2024년 소상공인 가입률은 목표한 25%에 미치지 못하는 6.5%로 저조하게 나타남. ○ 최근 4년 간 풍수해보험 손해를 현황에 따르면 다른 정책보험 대비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이 낮은 상황으로 국가의 재정분담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면서도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2634-304)	제도개선	행정 안전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397개소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축된 시설은 243개소로, 추가로 구축할 154개소들의 경우 토지 매입 등 사전 준비와 보조금 교부·관리 미흡으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 최근 5년 간 주민대피시설 실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상당 규모의 실집행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전체 사업대상 2개소(인천 강화, 경기 연천) 모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실집행률이 3.1%에 불과한 수준임. ○ 접경지역 중 정부지원 설치대상지역인 주요 15개 시·군의 주민대피시설 수와 주민등록 인구통계 비교 결과, 15개 시·군 전체의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은 432.2%이나, 일부 접경지역(웅진, 연천, 양구)의 면단위 평균 수용률은 30.3%에 불과하며, 이 중 대피시설이 없거나 인구 대비 10% 미만인 곳이 절반에 해당함.		
		시정요구사항	○ 행정안전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연례적인 실집행이월 과다를 방지하고, 사업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주민대피시설 구축 현황 재검토를 통해 연도별·연차별 계획대로 해당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행정안전부는 주민대피시설 구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구체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휴직자 추계 등 인력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인건비 예산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인건비 예산을 연초 30억 1,300만원을 이용하는 등 총 36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제22대 총선 이후 복직자 증가 등으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 이를 위해 이·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65억 3,500만원을 증액 조정함. 인건비 예산 충당을 위한 과도한 이·전용은 타 세부사업의 필요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축소·지연 실시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반복적인 인건비와 타 사업 간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 3년간 휴·복직자 추계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적정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며, 선거 직전 휴직자 대거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제고 및 전문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1131-301),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선거지원단은 투입 대비 낮은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한시적 인력 중심 운영과 정치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채용 방식, 인력 교육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량 및 정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인력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선거지원단에 지급된 성과수당은 성과수준, 성과내용을 고려하지 않는 등 기준이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선거법 등 법규평가에 대한 성과수당의 경우 동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금액이 2만원 미만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법규평가의 심사 목적인 ‘선거법 이해도’는 공정선거지원단 자체의 자격 요건으로 이를 평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성과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법규평가 우수자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을 재검토할 것		
4	재외선거 매체별 홍보예산 재조정 등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선거관리(1131-305)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재외선거 홍보방식에 대한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와 달리, 동 사업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4억 6,200만원(60.6%)을 집행하고, 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재외선거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에는 1억 2,800만원(16.8%)만을 집행하여 실제 유권자의 인식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체환경의 변화,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및 재외국민의 매체활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체별 홍보 예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등 홍보 효과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탁선거관리(1131-306)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한정되고,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법적 근거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결산 대상에 누락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등 몇 가지 예외 사항만을 예외로 두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17조상 예산총계주의를 고려하여,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6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지양 및 사업수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제도개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적사항	○ 선거참관프로그램 추진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개별 장·관·항 간 예산 이용의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별도 프로그램(항)에 편성된 사업인 “서울국제선거포럼(7132-345)” 예산을 통합하여 단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집행하였음. ○ 또한, 실제 집행에서 항공임 및 숙박비 등에서 세부사업 예산 구별없이 집행하고, 사업수행업체에 과목별 구분없이 사업비를 일괄 지급했으며, 교통수단 임차에서 차량사양,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 단가로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시정요구 사항(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집행 절차를 점검하고, 재정통제 및 집행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과목별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다. 인사혁신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당해연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지양 및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험 시행(1631-300)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시험관리 부대비용’ 사업은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목조정을 통해 3억 3,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 세목조정의 규모가 과다하고, 다수의 시설공사가 예산 편성 시점에 그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향후 당해연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부처별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1645-302)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2024년도에는 개방형직위 선발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125개→94개: 31개(24.8%) 감소],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도 76.3%로 부진한 편이었음. ○ 2023년부터 개방형직위 선발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4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규정이 삭제되어 개방형직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선발이 감소함에 따라 각 부처별 일반임기제 채용은 확대되므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일반임기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확인, 사후 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파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934-531)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국제기구와의 협의 지연, 실제 소요에 못 미치는 예산 편성 등의 원인으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신규 임용지연 및 기존 직위의 장기 공석 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130개 직위(46개 기구) 중 11개 직위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공석이 발생하였고, 신설된 10개 직위 중 7개 직위에서 연내 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파견 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국제 현안 대응력 약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4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증설 및 상담 인력 증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운영(2044-306)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직무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개소에 총 26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요 센터에 상담사의 추가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권역별 접근성 측면에서도 현행 10개 센터만으로는 전국 공무원의 상담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상담사 1인당 적정 처리 가능 건수(개인상담 월 48건, 연 570건)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센터별 적정 상담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담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상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정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주의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최근 4년간(2022-2025) 선정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들 중 주택사업관리, 대여학자 금융자 등 2개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두 차례 이상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음에도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 간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여학자금융자[대여학자금융자(3141-321) 및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주택사업관리(3151-333) ○ 해당 2개 사업은 계획액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더라도 지출소요가 계획액을 초과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변경(증)이 불가피하므로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의 신속한 반환 및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반환의 근거규정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등(*) * 회계기금간거래 중 일반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8920-891) 및 특별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8920-892),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주의 및 제도개선	인사혁신처
		지적사항	○ 국회 시정요구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2024년 결산 기준 누적된 잉여금 규모가 8,621억원에 달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초래되고 있음. ○ 수탁금 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반환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수탁금 잉여금을 내부에 과도하게 유보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인사혁신처는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할 것(주의) ○ 인사혁신처는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자수입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라. 경찰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체납 과태료 징수를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매년 큰 규모의 과태료가 세입으로 결정되고 경찰청이 이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매년 50% 수준이고, 2023년부터는 징수결정에도 징수되지 못하고 미수납된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고 있음. ○ 5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는 963만건이 넘고, 금액은 6,806억원임.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제고 및 체납과태료 최소화를 위하여 교통 과태료 부과 체계 및 제재조치의 적절성과 대안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거나 타 부처와 협력하여 불법차량(체납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차량의 소유주와 운행자가 상이한 차량)의 적발 및 과태료 징수 수단을 모색하며, 과태료 담당 인력의 업무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2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의 고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에서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진 과태료 건에 대해 시효중단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2024년 46억원, 6만 9천건에 달하는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과태료의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경찰병원의 사업수익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환자 수 감소와 사업수입의 감소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일반회계에서 경찰병원특별회계(손익계정)로의 전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세입액 797억 1,300만원 중 일반회계전입금이 456억 4,600만원으로 57.3% 차지함. ○ 재정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사업수익 악화 및 국가 재정 의존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기동순찰대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분석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은 실질적인 업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함. ○ 지역경찰은 순찰 근무를 중심으로 필요할 때 다수 경찰관을 투입하여 중요 상황에 대응하는 반면,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순찰을 기반으로 광역 범위의 범죄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동순찰대 운영에 따른 인력재배치 및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후, 운영 및 확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경찰 사건기록보관실 건축 사업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12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강원 강릉서와 대구 달성서는 2025년 신축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 2024년에는 구축청사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임시로 기록보관실로 활용중이나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항온항습기 및 모빌렉(이동식 서가) 구입비 1억 6,100만원을 이월 처리함. - 2개서 임시보관실의 39,675개 사건기록이 항온항습기 없이 에어컨·히터로만 관리되고 있어 기록물 보존에 문제 우려 ○ 사전 계획 수립 시 설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향후 사건기록보관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보관실의 개·증축 및 보수, 기록 이전 등의 과정에서 수사기록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6	영상녹화 실시율 제고 개선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인권 및 피해자보호활동(1231-317)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검거건수 대비 영상녹화 건수로 측정되는 영상녹화 실시율이 2021년 7.0%에서 2024년 4.6%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 음성녹화 대비 영상녹화 자료 처리 절차의 번거로움, 수사관들의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영상녹화 실시율이 지속 감소하는 데 대해 명확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 규명에 따라 실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2024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42,369건이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비율은 21.6%로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대비 비율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반납자 중 실제 운전자 반납 비율이 저조(예: 천안시 16.9%)함. ○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에 따른 보상이 지자체별로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제공 인센티브가 상이하고, 지급금액도 통상 10만원이지만 지자체별로 15 ~ 30만원까지 차이가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이동수단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및 타 사업과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 사업의 이월 및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안전활동(1331-312)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80만원~6,120만원의 이월이 발생했는데, 이는 수요조사 및 계약체결 등 사업진행 지연에 원인이 있음. ※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은 계획연도가 경과한 이듬해 2월 말로 계획보다 지연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대형 오토바이 승무경찰관 보호복 구매 사업에서 지연 및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에 수요 조사 및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납품기간 및 검수기간을 고려하여 보호복 지급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경찰 해외파견인력 운영비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해외파견 공통운영비 집행률 저조 - 신변안전보험, 의료보험, 실의료비, 전지의료검진비 등 집행률이 매년 40~50% 수준에 머물며(2024년 48.7%), 특히 전지의료검진비는 거의 활용되지 않음(2024년 예산 200만 원 중 34만 원 집행). ○ 직원 차량 보험료 및 공용사용 지원비 미집행 - 파견지가 대중교통 발달 지역이거나 임기가 짧아 차량 구매·이전이 어려워, 2024년 편성액 2,3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됨. ※ 직원차량 보험료는 파견자가 개인 차량을 공무활동에 사용할 경우 1대 한도로 연 700달러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며, 공용이용 지원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등 공무수행 관련 경비를 보전하는 비용임.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향후 해외파견자 공통운영비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인원과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직원 차량 보험료 및 공용사용 지원비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해외치안협력 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송환율로 변경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주의	경찰청
		지적사항	○ 해외도피사범은 매년 증가(2024년 신규 951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단순 송환 인원으로 설정하여 2024년 목표 437명 대비 실적 691명(158%)처럼 성과가 과대평가되었고, 실질적인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025년부터 성과지표는 해외도피사범 송환율과 국내 도피 해외범죄인 송환율을 단순 평균해 평가하게 되어, 사업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담당 부서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해외치안협력강화 성과지표를 송환인원이 아닌 송환율로 바꿔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로 설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노후차량 교체, 증차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노후차량 교체’ 사업은 예산현액 805억 3,000만원 중 772억 3,100만원이 집행됨. * 차량 유형별로 보면 순찰차량은 62대를 초과하여 구매했고, 기능별 차량은 90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334대 부족한 566대를 구매하는데 그침. ○ 내역사업인 ‘증차’ 사업은 예산현액은 103억 3,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58억 1,600만원으로 초과 집행됨. ※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에서도 차량 구매계획과 실제 차량구매 간 차이가 있어 면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차량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며,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반영한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계획에 과도한 변경을 자제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전자충격기 국산화 사업 실패 원인 분석에 따른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관리유지(4231-314)	제도개선	경찰청
		지적사항	○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R3) 개발사업을 통해 국산화를 시도했으나, 2022년 구매단계에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2024년 국산화 제품 예산액보다 단가가 약 100만원 높은 미국산 제품(테이저7)을 구매함. ○ 해당 업체는 경찰청이 계약체결 이후 사후적으로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성능 검증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현재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 중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경과 • 2020.3~2021.7: 성능검증(7차) • 2022.11 : 개발업체와 36억 7,970만 원 규모의 R3 본체·카트리지 구매계약 체결 • 2023~2024 : 최종 납품검사에서 연속 부적합 판정 → 계약 해지 통보 ○ 구매 계약체결 당시 검증기준이 규격서 등에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으며, 핵심 기준인 표적지 도달(0.3mm 동관 관통)은 계약체결 이후 협의로 사후에 설정되는 등 계약체결 전 명확한 검증기준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장비유지관리 사업에서 구매하는 장비에 대해 성능 기준과 구체적 시험방법을 계약체결 이전에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마. 소방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세부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와 신체건강 이상을 예방·치료·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됨. - 재정투입 규모: 32.9억원('20년)에서 41.6억원(' 24년)으로 5년만에 약 10억원 증가 - ' 24년에 17명의 소방공무원 자살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 내근직 공무원이 30.1% 차지 - 상담인력 부족: ' 24년에 상담인력(총 102명) 1인당 779건 상담 진행 - 정신건강 관련 병원 치료비 지원은 '24년에 5억 6천만원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마음건강 고위험군,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출동자 등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심리적 문제의 예방·관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나, 소방공무원 전체 인력(66,048명)을 기준으로 볼 때 2024년도 동 프로그램 참가자 중 행정인력의 참가율(749명 참가, 6.5%)이 현장인력의 참가율(1,685명 참가, 3.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사업은 각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어 시·도별 여건 및 해당 지역 소방공무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시·도별 1인당 교육 비용(202,247원~990,000원)에 편차가 발생했으나, 1인당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이에 비례하여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현장인력 참여율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비를 편성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일부 공사 누락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우회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	시정	소방청
		지적사항	○ 소방청은 소방병원 건립공사 내용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회하였음. - 교통영향평가('21) 결과 지하주차장 1개 층을 추가하게 되어 약 300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33%)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음.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증액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나 '타당성 재조사' 시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기본설계 단계까지 반영된 헬리패드, 의료가스장비공사 등을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168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18.5%)만 증액하고('21.12.) 별도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았음. 이후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제49조제3항)을 근거로 2024년에 총사업비 78억원(헬리패드 38억원, 의료가스장비·배관공사 26억원, 방사선 차폐공사 6억원, 의료IT시스템 8억원)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증액하였고 부족한 공사비는 예산 전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형해화 하였던 바, 향후 유사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119 항공정비실 건립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1132-312)	주의	소방청
		지적사항	○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지연 발생 - 동 사업은 실시설계 기간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는데(당초: '24.1.~4. 4개월 → 변경: '24.7.~' 25.7. 13개월), 이는 연약지반 보강공사 재원 확보(1차 총사업비 조정, ' 24.12.) 및 법정의무 시설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추가(2차 총사업비 조정, '25.6.)가 필요하였기 때문임. -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21.4.~ 11.) 시 경찰청 충북항공대 격납고, 해양경찰청 포항격납고 등을 참조하였는데 해당 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없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에너지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검토하기로 조달청과 협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충북항공대 격납고와 포항격납고는 군부대 비행장 내에 위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여짐.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집행 관리를 하여 119항공정비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 소방청은 향후 유사 건립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정의무시설 추가 설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소방장비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과정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방산업육성지원(1133-30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2024년에 30개사 컨설팅을 목표로 하였으나 15개사만 컨설팅하였음. 이는 소방산업체의 저조한 관심, 복잡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 불충분한 사전 안내, 계약 추진 과정에서 지원 미흡 등에 기인한 것임. 그 밖에, 소방청의 소방장비 인증 서식과 조달청의 적격성 평가 서식이 달라 보완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을 받고 있던 기업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에 따른 컨설팅 중단 사례도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공공판로컨설팅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고품질 소방장비의 국내외 확산으로 소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	제도개선	소방청
		지적사항	○ 2024년도에 플랫폼을 수탁·운영한 민간업체가 위탁운영 과업 71건 중 22건이 미흡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느라 사업이 연내에 완결되지 못하였음.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과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임. ○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227건)가 무상 데이터 등록 건수(412건)에 비해 적고, 유상 거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2023년 2억 3,660만원 → 2024년 1억 1,730만원, 1억 1,930만원 감소), 플랫폼을 통해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증가 규모(연평균 증가율 2.0%)가 미미하여,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소방청은 사회적 현안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분야 빅데이터 품질 제고, 유통 활성화, 위탁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플랫폼 실질적 활용성 개선 등에 노력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4. 부대의견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 논의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교육제도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방소멸 대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활성화(2631-303)’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운영 외에도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인증된 제품의 사용실태 및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안전관리개선(2632-306)’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율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심층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보조) (2734-300)’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과도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보조) (2734-300)’ 사업과 관련하여,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조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자체의 신뢰성 및 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시행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혐오표현, 선동적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 인사혁신처는 의원면직 사유를 세분화하여 기록하고, 정신건강 상담·퇴직·사망 이력을 연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인사규정을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헌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경찰청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담팀을 조직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한다.